

2011 第 47 號

# 速記界

社團  
法人 大韓速記協會



**표지설명**

큰 나무와 같은 속기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CONTENTS

2011 速記界 47호

- 04 **머리말**  
변화의 물결 앞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생각하고 준비하는 우리가 됩시다 - 고흥길
- 06 **2010 인터스테노**  
INTERSTENO 중앙위원회 및 IPRS 회의 참가 보고 - 국제부
- 14 **연구논문**  
총회의 의사록 I (상법 제373조를 중심으로) - 김점동
- 34 **인터뷰**  
12문 12답 - 최예숙 이사
- 40 **기자수첩**  
1000년의 역사, 팔만대장경! - 김나영 기자  
소리 없는 공포 “난청” - 제신지  
우리말 고운말 - 기자영 기자
- 56 **세미나**  
제18회 속기학술세미나를 다녀와서 - 권오정
- 60 **새의자**  
신입관리자 교육을 끝내고 - 한순덕
- 66 **새내기 인사**  
좋은 날은 반드시 옵니다 - 김희숙  
새로운 시작 - 이상욱
- 78 **회원동산**  
16개월 동안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  
- 이세림(한글속기 국가기술자격증 1급)  
집들이 - 손상범  
먼 나라에서 온 선물
- 92 **협회 동정**  
제44회 정기총회  
협회 임원 및 기구표  
2011 INTERSTENO 국제속기경기대회 참가자 최종선발전
- 96 **편집 후기**

## 변화의 물결 앞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생각하고 준비하는 우리가 됩시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속기협회장 고흥길입니다.

회원 여러분들도 한 해 잘 지내셨는지요.

어느덧 2011년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국회 윤중로에는 봄 한낮 춘곤증을 이기지 못해 문득 잠든 꿈속에서 보는 환상처럼 벚꽃이 한창이었다가 아련하게 저 버리고 이제는 연녹색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올 3월에는 일본에서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그저 평온한 하루였는데 어느 순간 일어난 자연현상 앞에서는 우리 인간은 한낱 미물일 뿐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자연재해였습니다. 물론 두 달여가 지난 지금도 복구는커녕 일본 원전 때문에 여전히 위험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핵이라는 것이 주는 편안함 이면에 무서운 얼굴이 숨겨져 있다는 것은 아마 우리 인간들은 알면서도 모른 척 살고 싶었던 사실이었겠지요. 이번 일이 터지면서 핵과 근접해 있는 지역이나 나라 들은 다시 경각심을 일으키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자연만 따라서 원시 상태로 살아갈 수도 없는 법이니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현대 문명사회가 이루어 놓은 문명의 이기들, 그것들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지금 이 글을 쓰는 저조차도 펜을 들고 있기보다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니……. 이제 정말 문명에 발목 잡힌 채로 끌려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기록이라는 방법도 참 다양하게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청각장애인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 안에서 음성인식 서비스가 되는 것을 보면서 좀 있으면 음성인식의 시대가 오겠구나 하는 생각에 약간의 허탈감 비슷한 감정도 밀려왔습니다. '속기'라는 기록 방법이 유일하고 첨단일 때도 있었는데 이제 모든 음성을 다 문자화할 수 있는 시대가 오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물론 그 방법을 회의록 등의 우리 업무에서 쓰기에는 한계가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 또한 참 세상이 빠르게 발전해 간다 싶기도 합니다.

낙타는 위기를 맞으면 술수를 쓰지 않고 도전한다고 합니다. 정공법으로 승부수를 던지는 것입니다. 땀벌에 설 그늘도 없을 때 낙타는 오히려 얼굴을 햇볕 쪽으로 마주 향합니다. 햇볕을 피하려 등을 돌리면 몸통의 넓은 부위가 뜨거워지지만 마주보면 얼굴은 햇볕을 받더라도 몸통 부위에는 그늘이 만들어져서 어려움은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문명의 이기가 발전하는 만큼 우리의 인식 또한 거기에 맞추어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대는 앞서가는데 우리는 우리의 것이 유일이고 우리의 방법이 유일한 것인 양 있을 수는 없지요. 우리의 것을 기본으로 삼되 우리의 것을 발전시킬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할 때인 듯합니다. 그것이 우리 대한속기협회가 할 일이고 나아가갈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속기인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변화라는 물결 앞에서 더 이상 움츠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생각하고 준비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좀 더 발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INTERSTENO 중앙위원회 및 IPRS 회의 참가 보고 | 국제부

- 기 간 2010년 9. 28(화) ~ 10. 5(화)
- 장 소 헝가리 부다페스트, 오스트리아 빈 경유
- 한국대표 조영기(협회 전 국제이사, 국회)  
최윤정(협회 현 국제이사, 국회)  
이동준(협회 전 총무부장, 국회)  
김점동(협회 이사)



## 참가국 및 참가 인원

16개국 73명 참가 (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중국, 체코, 독일,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 세르비아, 스위스, 네덜란드, 터키, 미국 등)

## 참가 목적

- 기록문화와 속기에 관한 국제적 논의 및 발전 방안 강구
- 각국 의회의 속기 방식 및 회의록 발간 정보 교류 및 현안 사항 논의
- 우리나라의 속기 및 속기사 양성 체계의 홍보를 통한 국제적 위상 증대
- 선진국의 의회 속기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보 교류

## 오스트리아 의회 방문 및 INTERSTENO 중앙위원회 · IPRS 일정

일 자	장 소	일 정
9월 30일(목)	빈	오스트리아 의회 방문 및 연방속기사 면담
10월 1일(금)	부다페스트	인터스테노 참가 등록 중앙위 1차 세션
10월 2일(토)	부다페스트	헝가리 의회 방문 중앙위 2차 세션
10월 3일(일)	부다페스트	중앙위 3차 세션 경기대회 면담 Jari Niittuimper · 만찬
10월 4일(월)	부다페스트	IPRS 미팅
10월 5일(화)	프라하	체코 출발



- ① 오스트리아 의회 앞에서
- ② 오스트리아 속기사들과 함께
- ③ 오스트리아 의회 회의장 내부

## 오스트리아 의회 방문 및 INTERSTENO 참석 주요 내용

### ① 오스트리아 의회 방문 (9월 30일)

- 오스트리아 한국대사관 백환기 공사와 오스트리아 의회 LUKAS MUSSI 국제협력관의 안내로 그리스 신전을 모델로 1883년에 건립된 오스트리아 의사당 참관

- 오스트리아 연방의회 속기사와 면담

EVITTA FRIEDRICH(부과장), BEITINA BRIXA, CAROLINE PAUSER, 이상 3인의 오스트리아 속기사와 함께 오스트리아 연방의회의 속기과 운영 체제 소개 및 장내소란 시의 기록 문제 토론

옆의 그림은 오스트리아 의회 회의장 내부로 앞에 까만 의자가 놓여 있는 책상이 바로 속기사석임.

특이하게 3개의 책상이 있는데 이것은 수습 속기 사용으로 회의장에 들어가 직접 실무를 경험해 볼 수 있어 수습 속기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

### ② 중앙위 1차 세션(COUNCIL MEETING: FIRST SESSION) (10월 1일)

- 개회식 및 회장(GIAN PAOLO TRIVULZIO) 환영사를 마치고 9월 초 미리 배포한 보고서를 승인함.  
(COMMENTS AND APPROVAL OF THE PRESIDENT'S AND SECRETARY'S REPORT SPREAD BEGINNING SEPTEMBER 2010)



- 2009년 47차 베이징 총회 보고(REPORT OF THE CONGRESS IN BEIJING) 및 보고서 승인 (APPROVAL OF THE MINUTES OF THE COUNCIL MEETING IN BEIJING)
- 2010년 1월 이사회를 통과한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해 중앙위원들에게 추가 설명함.

(EXPLANATIONS ON THE BUDGET APPROVED BY THE BOARD IN JANUARY 2010 RULES FOR REIMBURSEMENT OF EXPENSES)



중앙위원회 회의 중

- FIAT 참석 보고

(COMPETITIONS AND CONGRESS OF PARLIAMENTARY AND COURT REPORTERS OF FIAT)

2010년 9월 23일부터 26일 사이에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FIAT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200명의 속기사들이 모여 속기경진대회가 열림. 인터스테노 측 대표로 MARCELLO MELANI가 참가해서 회장의 메시지를 전달함. 다음 회의에서 인터스테노 회원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③ 중앙위 2차 세션(COUNCIL MEETING: SECOND SESSION) (10월 2일)

- 인터스테노라는 명칭에 관한 검토 (UPDATING OF INTERSTENO NAME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PROCESSING')

인터스테노의 범위를 단지 속기와 타자에 국한시키지 않고 기록과 커뮤니케이션 및 이를 위한 IT 분야에까지 확장시키자는 발상에 대부분 위원들이 찬성함.

다만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PROCESSING'에 있어서 'COMMUNICATION'보다는 'INFORMATION'이 앞에 와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PROCESSING'으로 의견을 모음.

이 제안은 내년 파리 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임.

- 2011년 인터넷 경기대회 규칙 (INTERNET COMPETITION 2010 & INTERNET COMPETITION 2011).

2011년 3월 26일부터 5월 6일 사이 있을 인터넷 경기대회의 참가 자격은 12세 이상 그룹에서는 1분당 150글자에 1% 이내의 오타자, 16세 이상 그룹은 1분당 180자 이상에 1% 이내의 오타자 수준임.

- 회원 가입

(MEMBERS: DISCUSSION ON PROPOSAL FOR APPLICATION FOR ASSOCIATED MEMBER, MEMBERS: APPROVAL OF NEW INDIVIDUAL MEMBERS)

영국, 캐나다, 스페인, 미국 등 5건의 준회원(ASSOCIATED MEMBER) 신청에 대해 검토하고 내년 총회에서 결정할 것.

- 교육위원회(EDUCATION COMMITTEE) 및 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보고
- IPRS 활동 보고 (IPRS ACTIVITY REPORT BY RIAN SCHWARZ-VAN POPPEL)

상임위원인 RIAN SCHWARZ-VAN POPPEL로부터 2010년 7월 미국 찰스턴에서 열린 NVRA 대회와 8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NCRA 대회 참가에 대한 보고를 들음. 그들의 따뜻한 환영에 감사하고 만족스러운 대회였음.

#### ④ 중앙위 3차 세션(COUNCIL MEETING: THIRD SESSION) (10월 3일)

- 2011년 파리 총회에 대한 세부 사항 점검 (PLAN FOR THE NEXT CONGRESS IN PARIS)

프랑스 대표인 JACQUELINE BERTIN-MAHIEUX와 JEAN CHARLES LE MASSON이 2011년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될 파리 총회에 관한 개요 보고 및 토론

총회 및 숙박 장소 선정에 대해 여러 위원들의 우려가 있었는데 현재 세 군데로 나뉘어 있는 총회 장소의 동선에 대한 염려와 총회 기간인 7월 14일이 프랑스 혁명기념일이어서 실질적으로 총회 진행이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피력됨. 더불어 참가비 인하를 위한 재검토 요구

파리 총회 참가 등록은 2011년 1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터스테노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고 참가비는 총회 카드 발급 179유로, 경기대회 참가비 43유로와 만찬 및 관람비 128유로 등이다.

- 2011년 파리 총회 이후의 중앙위원회 및 총회 활동 제안 (PROPOSALS FOR COUNCIL AND CONGRESS MEETINGS AFTER PARIS 2011)

지난해 베이징 총회에서 예고된 바와 같이 현 회장 PAOLO TRIVULZIO 씨의 사임으로 새로운 집행부 선출이 필요, 중앙위원들은 올해 연말까지 회장을 포함한 7인의 이사회 임원에 대해 이메일을 통해 추천할 것임.



IPRS 회의 중

#### ⑤ 의회속기사부(IPRS) 미팅 (10월 4일)

각국 의회 소속 속기사 65인이 참석하여 열린 의회속기사부 회의는 RIAN SCHWARZ-VAN POPPEL의 2010년 7월 미국 찰스턴에서 열린 NVRA 대회와 8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NCRA 대회 참가에 대한 보고로 시작되었다.

올해 IPRS 회의의 주제는 지난 7월 브뤼셀에서 개최된 '의회 회의록의 작성을 위한 기술적 방법들(TECHNOLOGICAL OPTIONS FOR CAPTURING AND REPORTING)'에 관한 추가적 의견 제시와 토론이다.

흥미로운 제안으로는 각국 의회사무국과의 협조하에 IPRS 소속 속기사들이 속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나라의 기록 담당자를 초청하여 선진 속기제도를 참관하게 하고 속기술 교육을 돕는 안이 제안됨.

이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므로 각국으로 돌아가 담당자들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더불어 MARLENE RIJKSE와 FABRIZIO VERRUSO에 의해 제안된 기술의 발달에 따른 속기사 양성과 교육(RECRUITING AND EDUCATION OF NEW REPORTERS IN VIEW OF THE TECHNICAL DEVELOPMENTS IN THE REPORTING FIELD)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 성과

-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우리나라 의회의 제헌 이래 현재까지의 회의록 보존과 모든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한국 의회의 속기와 기록문화의 선진성에 관한 홍보로 국제적 위상 제고
- 중국 측 대표단과 별도의 모임을 갖고 내년에 아시아 5국(한국, 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 속기협회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도록 합의함.
- 비정형적인 회의의 회의록 작성 방법에 관한 다양한 사례 및 정보 교환
- 속기사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 대표단에 우리의 체계적이고 왕성한 속기사 양성 체계를 소개함.
- 중국 등 다른 나라의 기계속기 방식을 한국 기계속기에 접목할 연구 방안 기획 마련

## 건의사항

- 내년 아시아 5개국 속기협회 회의 개최를 위한 자원 마련과 프로그램 개발 등 행사를 위하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 한국 의회의 선진적 회의록 작성·보존 및 체계적 속기사 양성에 관해 홍보함으로써 한국의 위상 제고와 급변하는 속기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인터스테노 총회 등 공식적인 행사뿐 아니라 평소 각국 속기협회 간 비정기적 교류 활성화가 필요함.
  - 국제속기경기대회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콘테스트 및 다양한 이벤트 참여 기회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됨. 연중 회원들의 관심을 제고시킬 방안 강구 필요
- 2011년 인터넷 경기대회 (3월 26일 ~ 5월 6일)  
→ 2011년 파리 총회(7월 10일 ~ 7월 15일)

INTERSTENO 중앙위원회 및  
IPRS 회의 참가 보고



## 총회의 의사록 I (상법 제373조를 중심으로)

김점동 (대한속기협회 이사, 동우S&C 대표)



### 제1장 서론

#### I. 연구의 목적

상법 제373조(총회의 의사록)은 주주총회의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사록의 작성 이유와 그 쓰임새를 고찰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작성되고 있는 의사록이 지나치게 형식화되어 의사록만 보고는 결과만 알 수 있을 뿐 회의의 경과나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을 위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방안을 진지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 II.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주주총회 의사록에 관한 문헌적 자료와 이론적 연구 사례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행 법규상에 나타난 의사록 관련 조항들을 살펴보고 현재 상장회사들이 작성하는 의사록의



기재 예를 개관한 후 상장회사를 기준으로 본 학도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의사록 작성의 실례를 들고자 한다. 따라서 상법 제373조(총회의 의사록)을 핵심으로 마무리하되 그 전개 과정에 있어서는 인접의 의사록 관련 규정이나 그와 유사한 형태의 내용들을 일별하도록 한다.

자료와 사례의 부족은 본 학도가 의사록 관련 실무 과정에서 수집한 사례들로 보완하기로 하고 의사록 작성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논의를 전개해 보기로 한다.

## 제2장 의사록

### 제1절 의사록의 의의

의사록(議事錄)은 국어사전에서는 “회의의 경과 및 결정 따위를 적어 놓은 기록” 또는 “의사의 기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영어사전에서는 “A MINUTE BOOK, THE MINUTES [RECORD] OF THE PROCEEDINGS, PROCEEDINGS, JOURNALS, THE (OFFICIAL) RECORD OF THE PROCEEDINGS OF THE ASSEMBLY, THE ASSEMBLY RECORD, 국회 의사록 THE NATIONAL ASSEMBLY RECORD, HANSARD《영》등으로 표기되어 있는바 모두 각서, 메모, (간단한) 초고(草稿), 진행, 행동, 조치, 의회 일지, 의사록, 국회의사록 같은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구성 단어로서의 의사(議事)란 국어사전에는 “회의에서 어떤 일을 의논함 또는 그 회의”라든지 “회의에서 의논할 사항 또는 일을 의논함 또는 그 일”로 정의되어 있고 영어사전 역시 비슷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의사진행(議事進行)은 정치학에서는 RULES OF ORDER, 의사규칙, 운영 절차(PARLIAMENTARY PROCEDURE)라고도 하며 의회 또는 심의회에서 발언·토의·동의·의결 등 회의를 진행시키고 운영하는 절차와 방법을 말한다.<sup>1)</sup>

---

1) 출처 : 브리टे니카백과사전

의사진행 규칙을 공식화하는 목적은 의사진행 시 예의를 유지하고, 다수의 의지를 확인하며, 소수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심의 사안을 질서 있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의사진행 규칙에는 의회의 성원정족수·의결정족수·표결방법뿐만 아니라 발언의 순서, 발언자의 인원, 발언 시간까지도 포함된다. 특히 의회의 의사진행은 헌법이나 국회법으로 엄격하게 규정된 방법과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sup>2)</sup>

“경과요령(經過要領)”이란 “제안, 심의의 요령, 표결방법 등을 말한다. 요령만으로 족하므로 토의의 내용을 전부 개재할 필요는 없다.”고 정의하고 있다.<sup>3)</sup>

“경과(經過)”란 “시간이 지나감”, “단계·시기·장소를 거침”, “일이 되어 가는 과정이나 변천하는 과정”이며<sup>4)</sup> “요령(要領)”이란 “가장 긴요하고 으뜸이 되는 골자나 줄거리”이다.

“그 결과”란 회의체에서의 결과물인 결의, 의결, 결정사항을 말한다.

“의장”이란 주주총회의 주재자로서 그 의사를 진행하고 그 운영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자이다.

“출석이사”란 주식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에 구성원으로서 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는 자이며, 감사와 더불어 비록 주주총회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당연히 총회에 출석할 것이 예정되어 있고<sup>5)</sup> 주주총회의 원활한 완수를 위하여 준비 단계부터 종결 시까지 선관주의의무 등을 다하여야 함은 물론 주주총회에 보고나 의안의 설명 또는 주주들의 질문에 답변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는 자이다.

“기명날인(記名捺印)”은 자기의 성명을 쓰고 자기의 도장을 찍는 것이며 서명날인이라고도 한다. 등기 시의 도장은 개인 인감을 사용한다. 기명은 정자체(正字體)로 하여 명확성을 기하는

2) 위 사전

3) 법률용어사전, 현암사.

4) 민중엠텐스국어사전, 민중서림.

5)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주총회 운영대책 특별연수 교재」 40쪽, 2008. 1. 16 ~ 1. 17.

것이 좋다.

“서명”은 공적으로 등록해 놓은 서명으로 도장을 찍는 것을 대체하는데 이 역시 기명한 후 서명한다.

### 제2절 총회의 의사록

의사록은 주주총회의 의사 경과의 요령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그 내용의 명확한 신뢰를 확보한 기록문서로서 의사에 관한 증거로서의 효력을 갖는다.<sup>6)</sup>

주주총회 의사록은 주주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그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거기에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문서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위와 같은 기재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필요로 한다. 의사록이란 의사의 결과만이 아니라 경과요령도 함께 기재되는 문서라는 점에서 단지 그 결과만을 기재하는 결의록과 구별된다.<sup>7)</sup>

### 제3절 의사록 작성의 이유와 필요성

의사록을 작성하는 이유는 아래에 열거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의사록 작성의 본질은 그 의사에 관한 기록물을 통하여 그 의사에 참여한 자는 물론이고 참여하지 않았던 자들도 그 의사록을 보는 것만으로도 회의의 경과와 결과를 알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모든 기록이 그렇듯이 육하원칙에 따라 충실히 작성되지 않으면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그 결과를 도출하기까지의 경과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표결이 있었다면 무슨 이유로 표결을 하게 되었는지, 단순히 원안의 통과에 이의가 있거나 반대가 있어서 표결을 하였다고 기재하지 않고 반대하는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

이 내용은 상법에서는 이사회 의사록 규정에는 있으나 총회의 의사록 규정에는 도입되어

6) 박승룡·정병덕, 「상법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8쪽.  
7) 김교창, 「주주총회의 운영」, 육법사, 2002.

있지 않다. 또 상법상에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와 의결권 있는 출석 주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가결되는 보통결의사항일지라도 찬성 수만을 굳이 묻지 않았다면 반대 수도 기재하여 민주주의의 다수결원칙에 충실하면서도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모습도 의사록에 적극 도입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의 회의와 법원의 재판 과정, 많은 정부 내의 회의와 기업에서 정확하고 알찬 회의 기록을 위해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 회의체에서의 문서기록물 생산 효율성의 으뜸은 속기사에 의해 속기록화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동영상과 녹취가 있다. 의사록을 속기록처럼 작성하기는 그 작성자가 속기사이기 전에는 힘든 일이고, 또 실제 “의사록”이라는 용어의 취지는 속기록<sup>(FULL TEXT)</sup>이 아니라 의사록의 의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요약(MINUTE)에 있다.

하지만 의사의 요약인 의사록일지라도 지나치게 간략히 기재하여 이를 보고는 결과만 알 수 있을 뿐 경과의 중요 부분을 알기 어려운 실정이고 주주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이 회의 결과에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의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한다. 근래의 주주총회장에서는 속기사가 참석하여 기록을 담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의사록을 작성할 때에는 속기록 또는 녹음테이프를 참고로 하여 의사진행의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 이사가 날인 또는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sup>8)</sup>

### 1.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이유

상법 제373조(총회의 의사록)는 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주총회는 상법에 의하여 개최되기는 하지만 그 상정 의안 근거나 의결권 수의 제한이라든지 의안의 독립 상정 여부 등 많은 내용이 증권거래법을 비롯한 여러 법규와 연결되어 있어 이에 따른 의사록 작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8)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주총회 운영대책 특별연수 교재」 70면 2008. 1. 16 ~ 1. 17.

또 상법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은 제1항에서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제2항에서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제3항에서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제4항에서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법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제1항은 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9년 12월 개정 상법 이전에는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의사록을 본점에 비치하도록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었으나(상법 제396조) 경영상 비밀보호라는 실무상의 요구를 받아들여 1999년 개정 상법에서는 비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sup>9)</sup>

상장회사로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의 표준주주총회운영규정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표준주주총회운영규정 제42조(의사록의 작성)은 상법 규정에 부가하여 “의장은 총회를 마친 뒤 지체 없이 총회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이 이를 지체할 때에는 대표이사가 이를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준주주총회운영규정 제43조(의사록등의 비치·공시) ①총회의 의사록은 작성된 직후부터 계속하여 회사의 본·지점에 비치하고 주주와 회사채권자들의 열람·등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총회의 참석장 위임장 그 밖에 총회에 관한 서류는 총회의 종료 시부터 1년간 회사에 보존하고 주주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들의 열람 등사에 응하여야 한다.

9) 박승룡·정병덕, 「상법 I」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8쪽.



## II. 일반 기록으로서의 이유

주식회사는 기업의 영속성이라는 차원에서 일반적인 역사 기록으로서의 의사록이 필요하다. 우선 증거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기업의 역사를 기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추후 유사한 상황에 대한 참고자료로서, 내부 열람 및 보고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 III. 공증 서류로서의 이유

공증인법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제1항은 법인의 등기를 할 때에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의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IV. 등기 서류로서의 이유

상업등기법 제79조(주식회사 등기의 첨부서면에 관한 통칙) 제2항은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0조(설립의 등기)에서 창립총회의 의사록, 제92조(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에서 완전자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간이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이사회이사록), 제93조(주식이전에 따른 설립의 등기)에서 완전자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 제94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에서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이나 사원총회의 의사록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제95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에서 제9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면(소멸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이나 사원총회의 의사록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제103조(유한회사 등기의 첨부서면에 관한 통칙)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사원총회의 결의 또는 어느 이사나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원총회의 의사록 또는 그 이사나 청산인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제107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에서 소멸회사의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V. 감독기관 및 전자공시 서류로서의 이유

유기증권시장 상장 규정 제55조(주권상장법인의 결의 또는 결정 등의 신고 등)에는 “주권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결의 또는 결정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의 또는 결정 등의 내용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거래소에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주주총회 결과(주주총회 의안 및 의사록, 영업보고서 등)를 규정하고 있다.

유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69조(주요경영사항의 범위 및 신고방법) 및 유기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7조(주요경영사항), 제23조(주식매수선택권 신고서류의 제출)에 따라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한 때, 제77조(상장폐지 신청)에는 주권,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서를 상장폐지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를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서를 상장한 법인으로서 주주총회의 위임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상장폐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이사회이사록) 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VI. 소송 대비 서류로서의 이유

한편 주주총회는 통상의 의사를 처리하는 것이 보통이나 매우 복잡한 의사결정의 순간이 예고되기도 하는바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거나 경영 참여를 선언한 주주의 등장, 주주행동주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단체, 이사회 감사의 선임, 자본금의 증가, 집중투표 배제 조항 신설, 경영권 방어 조항의 신설 등에 반대하는 소액주주 내지 노동조합원의 참석으로 인해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사유 내지는 무효사유를 유발하고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의 의사록 작성은 통상의 의사록과는 달리 좀 더 세밀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 제3장 의사록 관련 법 규정

### I. 상법상의 규정

제373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91조의3(이사회 의사록) ①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391조의2(감사의 이사회출석·의견진술권) ①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 의무) ①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회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회로서 이익을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13조의2(감사록의 작성) ①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297조(발기인의 의사록 작성)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

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8절 사채

제510조(준용 규정) ②사채권자집회의 의사록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그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제3항은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와 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전항의 의사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제7장 벌칙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 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등이 의사록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한 때와 비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 드물기는 하나 회사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위해 개최된 주주총회에서의 표 대결로 경영권을 상실한 현 대표이사가 고의나 과실로 의사록 작성 자체를 하지 않거나 의사록 작성을 게을리하는 경우 또는 대표이사인 의장과 출석이사의 의사록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거부 등으로 신입 경영진들의 등기가 불가능하여 그 결과로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주주 및 채권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경우도 있다.

이는 법령과 정관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399조 제1항). 이에 따른 과실 책임의 입증 책임은 이사의 책임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아니한 평이사가 담당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평이사가 감시 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지한 때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판결(감시 의무의 위반)도 있다.<sup>10)</sup>

상법 제401조는 제3자에 대한 책임이라는 특별 규정을 두어 이사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이사가 악의·중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회사와 손해배상책임

10)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을 지는 이사 이외의 자인 제3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다.

주주 또는 주식인수인의 경우 “주식회사의 주주가 대표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와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횡령하여 회사 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제401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sup>11)</sup>와 같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와 간접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의사록 작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sup>12)</sup>

또한 감사는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제391조의2 제2항)가 있다.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감사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414조).<sup>13)</sup> 유치청구권(제402조)과 주주대표소송(제403조 이하)은 여기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또한 유한회사도 제566조(서류의 비치, 열람)에서 이사는 정관과 사원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사원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원과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II. 민법상의 규정

민법 제3장 법인 제76조(총회의 의사록) 제1항부터 제3항까지도 상법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제2항의 경우 상법에서는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으로 “경과”와 “요령”이 한 단어로 규정되어 있으나 민법에서는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으로 쉼표(.)를

11)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6093 판결

12) 경영권을 방어하지 못한 대표이사 의장의 고의적인 행위

13) 감사가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연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또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고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찍어 경과와 요령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 Ⅲ. 공증인법의 규정

#### 1. 공증인법

##### 제5장 사서증서의 인증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①법인의 등기를 할 때에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의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하는 공증인은 그 총회 등의 결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공증인이 당해 법인의 의결 장소에 참석하여 결의 절차와 내용을 검사하거나 당해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그 촉탁인으로부터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가 여부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의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④제57조제3항, 제58조 내지 제61조, 제63조제1항·제3항,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제3790호, 1985.9.14)

②변호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법인의사록의 인증과 어음·수표의 공증은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2.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 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법인은 별표 1과 같다.<sup>14)</sup>

14) 한국개발연구원의 171개 호



제23조(촉탁인이 다수인 경우의 기재방법) ①증서원부에 촉탁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할 경우에 촉탁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당사자 쌍방 각 1인만을 기재하고 그 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인원수만을 기재한다.

②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에 관하여 인증부에 촉탁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서명날인 자의 성명을 기재할 경우에 그 인원이 2인 이상인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공증인이 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을 할 때에는 인증부의 비고란에 회사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 V. 상업등기법

제79조 (주식회사 등기의 첨부서면에 관한 통칙) ②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0조 (설립의 등기)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8. 창립총회의 의사록

제92조 (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2. 완전자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간이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

제93조 (주식이전에 따른 설립의 등기) 주식이전에 따른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완전자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

제94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이나 사원총회의 의사록 또는 총사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

제95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제9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면(소멸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이나 사원총회의 의사록 또는 총사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

제103조 (유한회사 등기의 첨부서면에 관한 통칙) ②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사원총회의 결의 또는 어느 이사나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원총회의 의사록 또는 그 이사나 청산인의 동

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7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소멸회사의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사록

## VI. 비송사건절차법

제113조(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인가신청) ①상법 제496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VII. 상장회사표준주주총회 운영 규정

제9장 의사록 등

제42조(의사록의 작성) ①의장은 총회를 마친 뒤 지체 없이 총회의사록을 작성한다.

②의장이 이를 지체할 때에는 대표이사가 이를 작성한다.

제43조(의사록 등의 비치 공시) ①총회의 의사록은 작성된 직후부터 계속하여 회사의 본·지점에 비치하고 주주와 회사채권자들의 열람·등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총회의 참석장 위임장 그 밖에 총회에 관한 서류는 총회의 종료 시부터 1년간 회사에 보존하고 주주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들의 열람 등사에 응하여야 한다.

## VIII. 관계기관에의 공시·신고·보고 관계

### 1.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제55조(주권상장법인의 결의 또는 결정 등의 신고 등)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결의 또는 결정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의 또는 결정 등의 내용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거래소에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4. 주주총회결과(주주총회 의안 및 의사록, 영업보고서 등)

제77조(상장폐지신청) ①주권상장법인, 외국주권상장법인, 외국주식예탁증서상장법인 또는 채권(외국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장한 법인이 당해 주권, 외국주권, 외국주식예탁증서 또는 채권

의 상장폐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유가증권상장폐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권,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에탁증서의 상장폐지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를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에탁증서를 상장한 법인으로서 주주총회의 위임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상장폐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이사회(이사록) 사본

## 2.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한 때(발행공시 규정 제69조①2 아, 공시 규정 제7조①18, 상장 규정 제77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공시총괄팀)에 사유발생 당일까지 주총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69조(주요경영사항의 범위 및 신고방법) ①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기타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내의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익일까지 서류(모사전송(FAX)을 포함한다)로 금감위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가 사유발생 당일에 신고하도록 한 사항은 그 당일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당해 법인의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을 때

아. 당해 법인이 상장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때(개정 2004.7.28, 2005.3.28)

제20조(신고서 등의 첨부서류) ①영 제5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법인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가. 정관

나. 법인등기부등본

다.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에 관하여 발기인 전원의 동의를 증명하는 문서 또는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을 의결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

제72조(사업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영 제8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0.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제80조(합병신고서의 첨부서류) ①합병신고서에는 합병에 관한 자료와 합병당사회사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합병신고서에 첨부할 합병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합병이사회 의사록 사본

제103조(취득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④취득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예금보험공사·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및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최대주주인 경우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취득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

제110조(처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②처분신고서에는 처분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4조(신탁계약등체결·해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⑤신탁계약등체결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서조항 생략)

1. 신탁계약 등 체결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

⑥신탁계약등해지신고서에는 해지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서조항 생략)

### 3.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7조(주요경영사항) ①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 그 밖에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을 말하며 이 경우 이사회 결의는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용을 그 사유 발생일 당일에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8. 당해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한 때

제23조(주식매수선택권 신고서류의 제출) 주권상장법인은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내용 등 신고서류(이하 "주식매수선택권신고서류"라 한다)를 거래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위

원회도 포함된다.

#### 4. 유가증권시장상장 규정 시행세칙

제5조(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서의 상장예비심사청구 시 제출서류) ③규정 제1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거래소가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서의 상장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서의 발행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 및 거래소에 상장을 결의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제29조(주권 등의 변경상장신청 시 제출 서류 및 제출 시기) ②규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상장신청서 제출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상장주식워런트증권

나. 종목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2. 상장채권 및 상장수익증권

나. 당해 채권의 종목 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제31조(합병 등과 관련한 채권 등의 변경상장신청 시 제출 서류) 규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 등과 관련한 주식워런트증권 또는 채권의 변경상장신청서 제출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분할의 경우 분할을 결의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자산·부채 이전의 경우 당해 자산·부채 이전에 관한 계약서 사본

제34조(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서 상장법인의 신고 및 공고 사항) 규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장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서 발행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만, 제8호의 경우 변경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 말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3. 주주총회 결과(주주총회 의안, 의사록 및 영업보고서 등)

제35조(주권상장 투자회사 등의 결의 또는 결정 등의 신고 사항) ①규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권상장 투자회사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3. 주주총회의 결과(주주총회의사록, 결산서류 및 감사보고서 등)

②규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주권상장 부동산 투자회사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3. 주주총회의 결과(주주총회의사록, 배당에 관한 결의가 있는 경우 배당 성향 등)



③규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주권상장선박투자회사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3. 주주총회의 결과(주주총회의사록, 결산서류 및 감사보고서)

## IX. 유사사례

### 1. 국회법

제69조(위원회회의록) ①위원회는 위원회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수 및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국무위원·정부위원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진술인의 성명

6. 심사 안건명

7. 의사

8. 표결 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의사는 속기 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개정 2000.2.16)

③위원회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④소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1.5.31, 2000.2.16, 2005.7.28)

제115조(회의록) ①국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개정 1994.6.28, 2005.7.28)

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수 및 성명

4. 개회식에 관한 사항

5. 의원의 이동

6. 의석의 배정과 변동
  7.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8. 출석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성명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장의 보고
  11. 위원회의 보고서
  12. 의사
  13. 표결 수
  14. 기명·전자·호명 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5. 의원의 발언보충서
  16. 서면질문과 답변서
  17. 정부의 청원처리결과보고서
  18. 정부의 국정감사 또는 조사결과처리보고서
  19.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본회의의 의사는 속기 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 ③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사무총장 또는 그 대리자가 서명·날인하여 국회에 보존한다.
- 제116조(참고문서의 게재) 의원이 그 발언에 참고 되는 간단한 문서를 회의록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지방자치법

- 제64조(회의록)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의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 ④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비밀을 요한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X. 판례에 나타난 의사록

### 주주총회결의의 하자과 의사록

실제의 소집 절차와 실제의 회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주주총회 결의부존 재확인 판결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예(대법원 1992.9.22. 선고 91다5365 판결).

### 1인회사의 의사록

이른바 1인회사에 있어서 1인주주의 의사는 바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의사와 같은 것이어서 가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나 그에 의한 임원변경등기가 불법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1인주주의 의사에 합치되는 이상 이를 가리켜 의사록을 위조하거나 불실의 등기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예(대법원 1992.3.31. 선고 91다16310 판결).

II 편은 다음 호에 게재

## 최예숙 과장님 12문 12답

올해 국회 의정기록과에 '수필속기 보존을 위한 연구모임(이하 수보연)'이라는 연구모임이 생겼습니다. 수보연을 만드는 데 가장 공을 많이 들이신 최예숙 과장님(의정기록2과)께 수필속기에 대한 애정과 시작하시게 된 계기 등을 저희 홍보부에서 여쭙어 보았습니다.



## INTERVIEW

1. '속기'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되셨고, 시작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는지.

국회에서 국비로 속기 교육을 한다고 하기에 속기란 그냥 말 그대로 빨리 쓰는 것 정도로만 아는 상태에서 시험에 한번 응시해 본 것이 속기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배우다 보니까 비교적 적성에도 맞는 편이어서 계속 다니게 되었고, 그때가 20대 초반이었으니까 아주 까마득한 옛 일이 되었네요.

## 2. 수필속기를 배우는 데는 얼마나 걸렸는지.

1년 수료과정을 마치고 그해 4월 초에 바로 국회속기사 공채가 있었는데 운 좋게 합격했으니까 1년 걸린 셈입니다.

## 3.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수필속기의 매력은 어떤 것인지.

글쎄요, 속기문자를 보시면 꼬불꼬불 오묘하게 생겼는데 마치 누에고치에서 비단실을 뽑듯이 압축된 속기문자에서 어떻게 그리 많은 발언 내용들이 풀려나 오는지, 그것도 자신이 속기한 것은 자신만이 알 수 있다는 것, 그게 매력 아닐까요? 그리고 펜과 종이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건 메모가 가능하다는 점도 수필속기의 가장 큰 장점이자 매력이겠지요?

## 4. 속기를 하시면서 가장 어렵다고 느낀 점은 어떤 것인지.

이는 만큼 들린다는 것, 그리고 단순히 들은 대로만 속기하는 차원을 넘어 발언자의 발언 의도까지 정확히 간파해야 한다는 것, 나아가 회의진행 상황을 전반을 꿰뚫고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기록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점 등이거나 할까요.

그러한 바탕하에 내가 속기한 것 또는 내가 최종 검토한 내용 그대로 영구 보존된다는 점을 상기할 때 어렵다기보다는 웬지 숙연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점들이 속기란 단순히 기계적으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코 쉬운 분야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요소입니다.

## 5. 최근 '수필속기 보존을 위한 연구모임'을 만드신게 된 계기는.

수필속기 자체적인 보존 필요성 인식이 조금씩 싹트고 있던 차에 속기환경의



다양화에 대처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 촉매변수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필속기가 불원간 사라져 버릴 운명에 처할 것이 명약관화한데 선배 된 입장에서 그냥 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고민해 보지 않고서는 고민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없다고 하듯이 언제부터인가 저의 뇌리에 늘 그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모 고위 간부님께서 매우 현실적인, 그리고 우리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팁을 주셨습니다.

연구모임이 출범하기까지 성공 가능성 여부를 놓고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았지만, 설사 소기의 결실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단 시도라도 해 보는 '창조적 실수'가 백 번 낫다는 신념에서 지금의 '수필속기 보존을 위한 연구모임'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어렵게 시작한 만큼 '하면 된다'는 긍정적 마인드로 선후배 여러분 모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이 기회에 '手保研' 탄생을 위해 애써 주시고 애정 어린 관심과 힘을 실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6. 보존의 필요성.

기계속기가 속기의 양대 이념 중의 하나인 '신속성' 측면에서 기여한 바는 실로 지대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속기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필속기가 갖는 장점 하나만으로도 수필속기는 여전히 중요하고 따라서 지속적으로 계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필속기와 기계속기를 전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양자의

장점을 상호 접목시킨다면 보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현대사회는 전문성은 기본이고 그에 더하여 멀티 플레이어가 요청되는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 7.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특별한 방법을 찾기보다 먼저 수필속기의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 이제 막 첫 걸음마를 댄 수보연을 토대로 선후배 모두가 많은 애정과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해야겠지요.

속기라는 것이 '인내와 끈기' 없인 결코 목적 달성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보연에 거는 기대, 그리고 지켜보는 시선이 적지 않음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 8. 속기를 하고 있고 배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씀은.

먼저 단순히 수많은 직업 중의 하나라는 생각을 넘어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 대해 스스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높은 자긍심을 가져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 오류에 대한 기본 인식입니다.

속기란 어차피 신이 아닌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오류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기본 전제하에서 속기를 배우고 하는 것과, 오류란 자신이 지닌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단말마적 심정으로 속기하고 번문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다는 것, 이 두 가지 인식은 얼핏 생각할 때는 결과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9. 속기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未來를 담는 記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속기록은 단순히 과거사를 기록해 놓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속기록은 국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현안 및 안전에 관한 논쟁과 당시의 정치적 현실에 대한 정치인 자신의 정치적 견해가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는, 실로 엄청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매우 소중한 자료입니다.

속기하는 순간 이미 현재에서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리지만, 속기록에 담긴 내용을 통해 과거를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계승할 것은 계승하여 보다 바람직한 미래를 창출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속기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 짓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자부하고 싶습니다.

### 10. 진정한 속기사의 자세는.

‘직업이 그대를 영예롭게 해주지 않으면 네 스스로 직업을 영예롭게 하라!’

사마천이 ‘史記’ 저술에 정진한 이유 중의 하나로 “나는 宮刑에 항거하여 후세의 거울로 삼기 위해 이 책을 쓰노라”고 갈파한 것처럼 魂이 있는 사관, 자신이 기록한 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찌면 그것은 속기사로서의 생명을 잃는 것과 같지 않을까 일응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11. 회의장에서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는.

특별한 기억은 없고, 뭐 에피소드라기보다는 회의장에 들어가기 전에 볼펜을 잘 길들여서 두 개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중 한 개가 다 떨어지고 나머지 한 개도 공교롭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지요. 예전에는 볼펜의 품질이 지금만 못했

거든요. 자연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 옆에 계신 의원님께서 자상하게 보고 계시다가 볼펜을 넘겨주시던 일이 생각납니다.

또한 저의 경우 속기문자가 제법 큰 편인데다가 일문일답으로 타기라도 하면 글씨는 점점 더 커져서 노트 앞뒤 바닥까지 이리저리 돌려가며 쓰는 경우가 어찌다 있었지요. 그럴 때 의원님이나 위원회 직원이 눈치 빠르게 종이를 가져다 준 기억이 납니다. 오직 수필속기에서만 있을 수 있는 아찔한 경험이지요.

## 12. 기억에 남는 의원님이 계시는지.

너무도 많은 의원님들의 발언과 역사적 순간순간들을 접하고 기록했는데 어찌 기억에 남는 의원님이 없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의원님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지만, 속기사의 입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金守漢 제15대 국회의장님이십니다.

발언이 아주 물 흐르듯 논리정연하시고 중언부언 첩사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순간 속도도 제법 있으셔서 속기하는 맛도 나고 번문이 술술 잘 되었지요.

특히 김 의장님의 경우 국회속기록을 ‘國寶’라고까지 극찬해 주실 정도로 속기록의 가치와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해 주시고, 진정한 속기사 자세에 대해 준엄하고도 애정 어린 교훈을 주시는 고마운 분이십니다.

洪思德 의원님 역시 멋진 발언과 襟度 있는 매너, 그리고 속기록의 중요성에 대해 높은 인식을 가지신 분이라는 점에서 기억에 남습니다.

또 한 분, 김부겸 의원님의 경우 자신의 발언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영구 보존된다는 점을 매우 깊이 인식하시는 분으로 우리 속기사들에게 기억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1000년의 역사, 팔만대장경!

김나영 기자

올해로 팔만대장경 초경이 제작된 지 꼭 1000년이 되었다.

인쇄물이 아닌 목판이 1000년이나 온전히 보존된 것은 세계적으로 팔만대장경이 유일하다고 하는데 이런 이유로 팔만대장경 1000년을 기념하는 각종 축제, 다양한 행사들이 기획되고 있다는 기사도 곳곳에 보이기 시작한다.

1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지켜온 것은 그냥 단순한 ‘나무’에 불과한 것일까? 과연 팔만대장경은 무엇이고 그 팔만대장경이 견뎌 온 1000년이라는 세월은 어떠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 팔만대장경이란?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해인사 경내의 4동(棟)의 장경판고에 보관되어 있는 고려시대의 대장경 목판이다. 판각은 1237년부터 1248년까지 12년 동안 이루어졌으며 준비 기간까지 모두 16년이 걸려 완성되었다.

대장경을 만들 무렵, 고려왕조는 여러 차례에 걸친 오랑캐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혼란에



빠져 있었다.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1232년(고종 19)에 몽고군의 침입으로 초조대장경이 불타 버리자 국가에서는 대장도감을 설치하여 임금과 백성이 나라를 구하겠다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다시 이루어 놓은 것이 바로 팔만대장경이다.

### 팔만대장경 수난의 연속

부처님의 말씀을 정성스럽게 모으고 다듬어 새겨둔 팔만대장경판은 그 방대한 규모와 완벽함에 오늘의 우리를 다시 한번 감탄하게 한다.

민족의 수난과 역사를 함께 하여 온 대장경판은 멀리는 고려 말기와 이조 초기의 왜구 침입, 조선 중기의 임진왜란, 가까이는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순간도 안심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8만 1258장에 이르는 경판이 단 한 장의 분실도 없이 고스란히 보존될 수 있게 된 것은 아슬아슬한 몇 번의 위기를 잘 넘겼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를 기록에서 알아보자.

첫 번째 위기는 조선왕조실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종 5년 조를 보면, 12월 25일 일본의 끈질긴 대장경 하사 요구에 시달린 임금은 “대장경판은 무용지물인데 이웃나라에서 간절히 청구하므로 이를 주어 버리려고 하였다. 이에 대신들이 논의를 하여 임금께 말하기를 ‘경판은 비록 아낄 물건이 아니으나 일본이 계속 청구하는 것을 만약에 지금 일일이 들어주었다가 뒤에 우리가 줄 수 없는 물건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면 이는 먼 앞날을 내다보지 못한 것이 됩니다’ 하여 일본에 경판을 주는 것을 반대하였다. 임금은 신하들의 의견에 따라 대장경판을 달라는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는 대목이 있다.

만약에 그때 세종대왕의 말씀대로 경판을 일본에 주어 버렸더라면 오늘날 얼마나 통



탄하였겠는가?

같은 조선왕조실록 세종 19년 4월 28일 조에는 “임금이 승지들에게 이르기를 ‘일본국에서 매양 대장경판을 청하니 우리나라에서 불교를 숭상하지 아니하여 이 판이 도성밖에 멀리 있기 때문에 역지로 청하면 반드시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 까닭이다. 지난날에 이 판을 구하기에 대답하기를 우리나라에서 전해 내려온 국보를 가벼이 남에게 줄 수 없다고 하였더니 저들이 얻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 판을 도성 근방인 회암사나 개경사 같은 곳에 옮겨 두면 저들도 이를 듣고 우리나라에 대대로 전하는 보배라는 뜻을 알고 스스로 청구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수송하는 폐단이 염려되니 그것을 정부에 논의하라’ 하니 신하들이 대답하기를 ‘수송하는 데 어려움이 있사오니 감사로 하여금 감찰하고 수령이 맡아서 더럽히거나 손상시키지 못하게 하고 수령이 갈릴 때에는 장부에 기록하여 전해서 맡게 함이 마땅하옵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는 대목이 있다.

만약 그때 세종대왕의 의견대로 서울 근교로 옮겨 왔더라면 임진왜란, 병자호란,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격변기에 팔만대장경이 잘 보존되었을 리가 없다.

두 번째 위기는 임진왜란 때였다.

선조 25년 4월 13일에 부산에 상륙한 왜군은 27일에는 해인사 코앞인 성주를 점령해 버렸다. 성주에서 합천 해인사로 들어와 팔만대장경판을 약탈하는 데는 하루 이틀이면 충분한 가까운 거리였다. 일본은 조선 초기부터 우리 팔만대장경의 하사를 180여 회에 걸쳐 줄기차게 해 오던 터였으니 마음만 먹으면 약탈은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운 일이었다. 그러나 의병을 일으켜 가야산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왜군의 해인사 진입을 막아내었다. 성주성을 점령하여 주변의 여러 고을을 계속 노략질하고 있던 왜군은 8월과 9월, 12월의 대규모 의병 공격에 견디지 못하고 이듬해 1월에 선산 쪽으로 철수함에 따

라 낙동강 서쪽 지역이 모두 수복되고 해인사의 팔만대장경도 안전할 수 있었다.

세 번째의 위기는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한국전쟁 때였다.

1950년 6월 25일 남침한 인민군에 의해 불과 3개월도 안 되어 낙동강의 동편을 제외한 전 국토가 저들의 수중에 들어가 버렸다. 그해 9월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되어 북쪽으로 퇴각하지 못한 인민군 1000여 명이 해인사를 중심으로 게릴라 활동을 하고 있었다. 소탕작전을 벌이고 있던 국군은 미공군에 공중지원을 요청하였고 그 지원편대의 편대장이 김영환 대령이었다. 51년 12월 18일 해인사 폭격명령을 받고 출격하였으나 미군 작전당국의 명령에 불복하고 폭격하지 않았다. 그의 업적을 기리는 공덕비가 해인사 일주문 앞 세계문화유산지정 기념비 옆에 세워졌다.

한편 최근 장지량 전 공군참모총장은 모 일간지와와의 인터뷰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51년 7월 어느 날 경남 산청 경찰서에서 해인사가 빨치산에 점령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이 사실을 보고하자 즉각 미군비행고문단의 폭격명령이 떨어지더군요. 그러나 빨치산 파잔병들이 거점 확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식량을 구하려 해인사에 들어왔다는 판단이 앞서더군요. 그래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불교신자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 팔만대장경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꼭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당초 팔만대장경의 제작이 의도했던 불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김영환 장군과 해인사 폭격명령을 받은 당시의 군인들에게 귀중한 우리의 문화재를 지켜야 되겠다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를 무사히 넘겼다고 생각된다.

화재로 인한 소실 위기도 많았다.

화재에 관하여는 1876년 퇴암스님이 해인사 실화적(失火蹟)에 상세히 기술해 놓았는



데 그 내용의 주요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1695년 우연히 불이 나서 동쪽의 여러 요사와 만월당 및 원음각이 타 버렸고 이듬해인 1696년 봄에 또 화재가 발생하여 서쪽의 여러 요사와 무설전 등이 불탔다. 150여 년이 지난 1743년과 1763년 및 1780년에 연달아 불이 났으나 뜻있는 이의 시주를 받아 계속 복구하였으므로 전날의 규모가 사라지지 아니하였다. 40여 년이 지난 1817년에 다시 큰 불이 나서 수천여 간의 건물이 모두 타 버렸는데 관찰사 김노경이 계획을 세우고 영월·연월 스님이 중건하였으나 전날의 규모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50여 년이 지난 1871년에 또 화재가 나 법성료가 불타 버렸다.”

신라 애장왕 3년에 창건된 해인사에 기록이 남아 있는 시기부터 따져서도 불과 300여 년 사이에 자그마치 일곱 차례의 화재가 있었다 하니 기록에 없는 기간까지 포함한다면 장경각을 지은 후에도 수십 차례의 화재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 많은 화재에도 불구하고 특히 불길이가기 쉬운 산 위쪽에 위치한 장경각이 온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기적이라고만 말하기에는 너무 신비하고 경외스러울 따름이다.

### 팔만대장경, 그 1000년의 의미

팔만대장경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현실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물론 부처의 힘을 빌려 몽고를 격퇴시키려는 염원으로 새겨진 팔만대장경 자체에 담겨져 있는 큰 의미도 한몫 하겠지만 그것을 1000년의 긴 세월 동안 완벽하게 지켜온 것에 아주 큰 가치가 있는 것이다. 기록과 보존은 떼어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

연속된 수난을 견뎌 온 팔만대장경이지만 영원한 보존에는 한계가 있다. 나무는 언젠가는 썩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올해 팔만대장경이 디지털로 복원되기도 했다. 비단 팔만대장경뿐만이 아니다. 현대에는 각종 콘텐츠의 발달로 보존 가능 방법이

다양해졌다. 때문에 기록문화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매번 부끄러운 수준이었지만 올해까지 3년 동안 기록문화에 대한 글을 한 편씩 써 왔다.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찾아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의 끝은 항상 우리 조상들에 대한 놀라움이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 유산들의 설명에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표현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생각은 '과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몫은 무엇인가'이다. 나아가 '속기사인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로 확장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도 얼마 지나지 않아 과거가 되고 우리가 지금 치열하게 만들어 내는 기록의 결과물들도 과거의 일들이 될 것이지만, 팔만대장경이 1000년의 역사 동안 잘 보존되어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준 것처럼 과거는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과거는 곧 미래다. 우리는 흘러간 말을 기록하는 속기사지만 우리가 기록한 역사는 곧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의 가치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조상들의 기록문화정신을 본받아 세계에 유례가 없을 기록물을 우리 손으로 생산해 내는 것, 또 그것을 현대적인 방법으로 영구히 보존하는 것, 우리들이 이 두 가지를 잘 연구하고 지켜낸다면 1000년을 맞은 팔만대장경을 뛰어 넘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 소리 없는 공포 “난청”

제신지 기자

### 노동건강연대 429명 설문조사

법정에서 재판과정을 기록하는 속기사 대부분이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인 노동건강연대는 전국 법원의 속기사 429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7.4%(418명)가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단체는 또 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가 이들의 답변 내용을 분석한 결과 76%(326명)에 대해 근골격계 장애위험이 매우 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목, 어깨, 허리 등에 통증이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환은 고정된 자세로 장시간 반복적인 일을 했을 때 주로 생긴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57.8%(248명)가 “속기 일을 시작한 뒤 청력이 나빠진 것 같다”고 밝혔고, 이 가운데 75.0%(186명)는 이명(耳鳴)현상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노동건강연대는 “법정의 속기사들은 좁은 의자에 앉아 장시간 휴식도 없이 일하고 있다”며 “설문 결과는 이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6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법원 속기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2009. 4. 4.) 임형섭 기자

위 기사는 2009년 4월 4일자 인터넷판 연합뉴스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입력 작업이 많은 속기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주로 근골격계 질환과 난청 질환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평소 신경을 써서 들어야 하고, 다시 확인작업을 거쳐야 하는 우리로서는 난청 질환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이번 속기계에서는 난청에 관해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40대의 직장인 김 모 씨는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괜찮겠지……’라고 여기고 병원 방문을 미룬 후 회사에 출근해 업무를 봤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2주가 지난 후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비인후과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을 받았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치료해야 치료율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뒤늦은 후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들어 김 모 씨와 같이 30~40대의 직장인들 중에서 돌발성 난청을 경험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 소리가 안 들린다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돌발성 난청은 특별한 원인 없이 갑자기 고도의 난청과 귀 울림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명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은데, 컴퓨터를 켜는데도 하드디스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가 환풍기 소리가 들리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와 함께 때로는 현기증이나 구역질 등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은 때때로 메니에르 병이나 유전 혹은 면역 이상으로 인한 난청 등과 혼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예로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의 여주인공이 청신경 종양이 원인이 되어 갑자기 귀가 안 들리는 경험을 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환들의 경우 같은 증상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반면 돌발성 난청은 같은 증상이 반



복해서 일어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난청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소리의 진동은 귓바퀴에서 모아져서 외이도를 따라 고막에 전달됩니다. 귀는 귓바퀴에서 고막까지의 외이, 고막에서 달팽이관 입구까지의 중이, 달팽이관이 들어 있는 내이로 이루어지는데 귓바퀴는 소리가 나는 방향을 구분하고 고주파 음을 증폭시키며 외이도는 소리를 고막까지 전달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 따르면 난청은 “소리가 전달되거나 변환되는 복잡한 과정 중 어느 한 곳이 망가져서 생긴다.”고 정의합니다. 즉 외이, 중이, 내이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병변이 생기면 소리를 잘 들을 수 없는 난청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구자원 교수는 외이와 중이 질환에 의한 난청은 그 질환이 호전되면 난청도 좋아지나 내이 질환에 의한 난청은 내이 질환이 치유되더라도 회복되지 않는 예가 많으며 난청은 보통 만성중이염과 삼출성중이염, 소음성 난청, 돌발성 난청 등 그 양태와 증상이 다양하다고 설명합니다.

우리 속기사들에게 가장 잘 일어날 수 있는 돌발성 난청, 이 돌발성 난청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전문가들은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돌발성 난청은 돌발적으로 한쪽이나 양쪽에 나타나는 원인 불명의 감각 신경성 난청을 말하며, 대개 한쪽 귀에 나타납니다. 바이러스 감염 또는 혈액순환 장애 등을 원인으로 추측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귀가 멍멍해지면서 들리지 않거나 난청 발생을 전후해 이명 현상이 생기기도 하며 현기증과 구토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으나 어지러움이 반복되지 않을 때는 돌발성 난청을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질환은 치료의 시작이 빠를수록 청력 회복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응급질환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2주 이내 치료 시작 시 20세 이상과 40세 이하 환자, 초기 청력 역치(HEARING THRESHOLD, 聽力 域值 : 주파수별(125Hz~8,000Hz)로 순음을 들려주었을 때 각 주파수대에서 피검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나 말)가 많이 떨어지지 않은 경우나 현기증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후가 좋다고 합니다. 대개 발병 1주 이내 내원한 경우는 70%, 1~2주 내에 내원한 경우 치료율이 50%, 2주를 넘겨 찾아온 환자는 30% 미만의 회복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약물치료와 더불어 안정과 짜지 않은 저염식을 권하며 흡연의 중지와 소음에 노출되지 않게 합니다. 대개 스테로이드 제제를 포함한 약물요법을 시행하며 일반적으로 약 1/3에서는 완전회복, 1/3에서는 부분적 회복, 1/3에서는 전혀 회복이 안 되거나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회복이 되더라도 약간의 귀 울림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음이 더욱 심해지는 환경에서 난청이 의심스럽다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꼭 진찰을 받고 치료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음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서 발표한 난청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1.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소리를 크게 듣는다.
2. 다른 사람들이 내 목소리가 크다고 한다.
3. 영화관이나 집회장에서 남보다 앞에 앉아야 소리가 잘 들린다.
4. 전화 통화 시 상대방의 말이 잘 안 들린다.
5. 귓속에서 귀울음(이명) 소리가 난다.

그렇다면 좋은 청력을 유지하는 비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전문가들은 어두운 귀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으려면 평소 다섯 가지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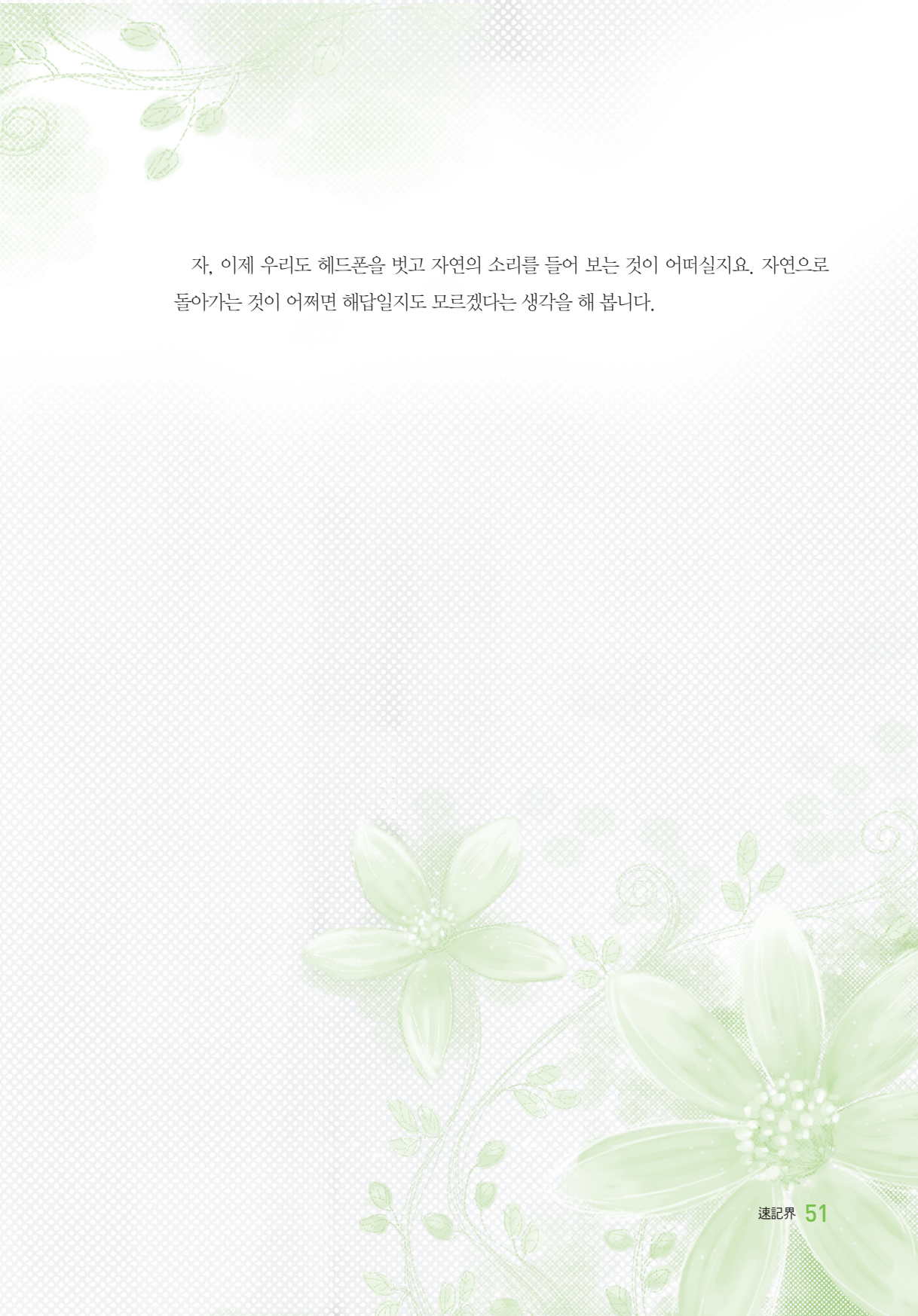
우선 과도한 소음에 오랫동안 노출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폰을 이용해 음악을 듣는 것도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어폰을 너무 장시간 사용하지 하지 말고 중간 중간 이어폰을 빼 귀가 쉬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겠지만 업무를 하지 않을 때는 꼭 헤드폰을 벗고 휴식을 취하세요.

귀를 너무 자주 파는 것도 위험합니다. 자주 귀를 후벼 긁속에 물리적 손상이 생기면 청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귀에 물이 들어가면 억지로 손을 넣어 물을 빼내려 하지 말고 머리를 숙이고 제자리 뛰기를 해 물을 빼내거나 따뜻한 돌 등을 귀에 대어 자연스럽게 말려야 합니다.

그리고 중이염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난청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중이염이 오래되면 청각 기능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감기가 오래 간다 싶으면 이비인후과에 들러 검사를 받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중장년층은 고혈압, 당뇨병 등 성인병을 주의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 생기는 노인성 난청은 성인병의 영향으로 청각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과로와 스트레스를 피해야 합니다. 또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고 담배, 카페인 등을 피하며 염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도 성인병 예방의 지름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생제 주사를 장기적으로 맞으면 청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다면 꼭 의사와 상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난청은 한 번 안 좋아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힘든 병이라고 합니다. 바람직한 식생활과 운동, 좋은 생활습관을 갖는 것만 이 난청을 예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자, 이제 우리도 헤드폰을 벗고 자연의 소리를 들어 보는 것이 어떠실지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찌면 해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우리말 고운말

기자영 기자



### \* 외래어 표기

#### 템즈강, 템스강?

‘THAMES’강의 바른 한글 표기는 ‘템스 강’입니다.

‘THAMES’의 원어에서의 발음은 [TEMZ]입니다. 이것을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에 따라 한글로 옮기면 ‘템스’가 아닌 ‘템즈’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HAMES’를 ‘템스’로 적는 것은 지명, 인명 표기에 있어서의 별도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1986년 1월 7일 고시된 외래어 표기법은 표기의 큰 원칙만 제시하였을 뿐 지명, 인명 등의 고유명사와 일반 어휘에 대한 사정은 별도 작업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명, 인명 등의 고유명사에 대한 표기 용례 심의 작업이 따랐는데 작업 과정에서 라틴어, 그리스어, 러시아어 및 이 밖의 기타 언어에 대한 표기 원칙이 마련되었으며 영어의 표기에 있어서는 몇 가지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는 외래어 표기법에서의 규정과는 다른 것입니다. “어말의 -s[지]는 ‘스’로 적는다.”는 규정이 그 한 예입니다. 그 결과 ‘CHARLES, EVANS, JAMES, STEVENS, THAMES’는 각각 ‘찰스, 에번스, 제임스, 스티븐스, 템스’로 표기하게 되었습니다.

어말에서 유성마찰음으로 소리 나는 [지]를 한글로 표기할 때 파찰음과 모음의 결합인

‘즈’로 적지 않고 마찰음과 모음의 결합인 ‘스’로 적도록 함으로써 원어의 발음과 보다 가까워진 표기가 되었습니다.

고유명사의 경우는 예외 없이 어말의 ‘-s’[z]를 ‘스’로 적지만 보통명사의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고유명사가 아닌 일반 용어에 대한 표기 용례 사정 작업은 1988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에는 ‘NEWS, BELLOWS, CALLIPERS, GALLOWS, LEGGINGS’는 ‘뉴스, 벨로스, 캘리퍼스, 갤로스, 레깅스’로 정해졌지만 ‘LENS, CYMBALS, DRAWERS, SHOES’는 ‘렌즈, 심벌즈, 드로어즈, 슈즈’로 정해졌습니다.

새로 들어올 외래어의 경우에는 외래어표기용례심의회에서 ‘스’로 할 것인지 ‘즈’로 할 것인지를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 심의 결정한다고 합니다.

#### \* 띄어쓰기

##### ‘밖에’

‘밖에’에는 조사인 ‘밖에’가 있고 명사 ‘밖(外)에’가 있습니다. 물론 조사일 경우에는 앞말에 붙여 쓰고 명사일 경우에는 앞말과 띄어 씁니다.

조사 ‘밖에’와 명사 ‘밖에’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의미에 의존하기보다는 조사 ‘밖에’가 쓰일 때는 서술어가 부정을 나타내는 말들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 ㄱ. 가진 돈이 1000원밖에 없어.
- ㄴ. 철수는 공부밖에 모르는 아이야.
- ㄷ. 이 일은 영수밖에 못해.

조사 ‘밖에’는 없다, 모르다, 못하다와 같은 부정을 뜻하는 말과 어울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명사 ‘밖에’는 이러한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명사 ‘밖에’ 뒤에도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긍정을 나타내는 말로 비꿀 수 있다는 점에

서 조사 '밖에'와 다릅니다. 조사 '밖에'는 '있다'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ㄱ. 가진 돈이 1000원밖에 없어. (O)
- ㄴ. 가진 돈이 1000원밖에 있어. (X)

### '만'

'만'이 조사로 쓰일 경우에는 주로 '한정'이나 비교의 뜻을 나타냅니다.

- 철수만 오너라.(한정)
- 키가 형만 하다.(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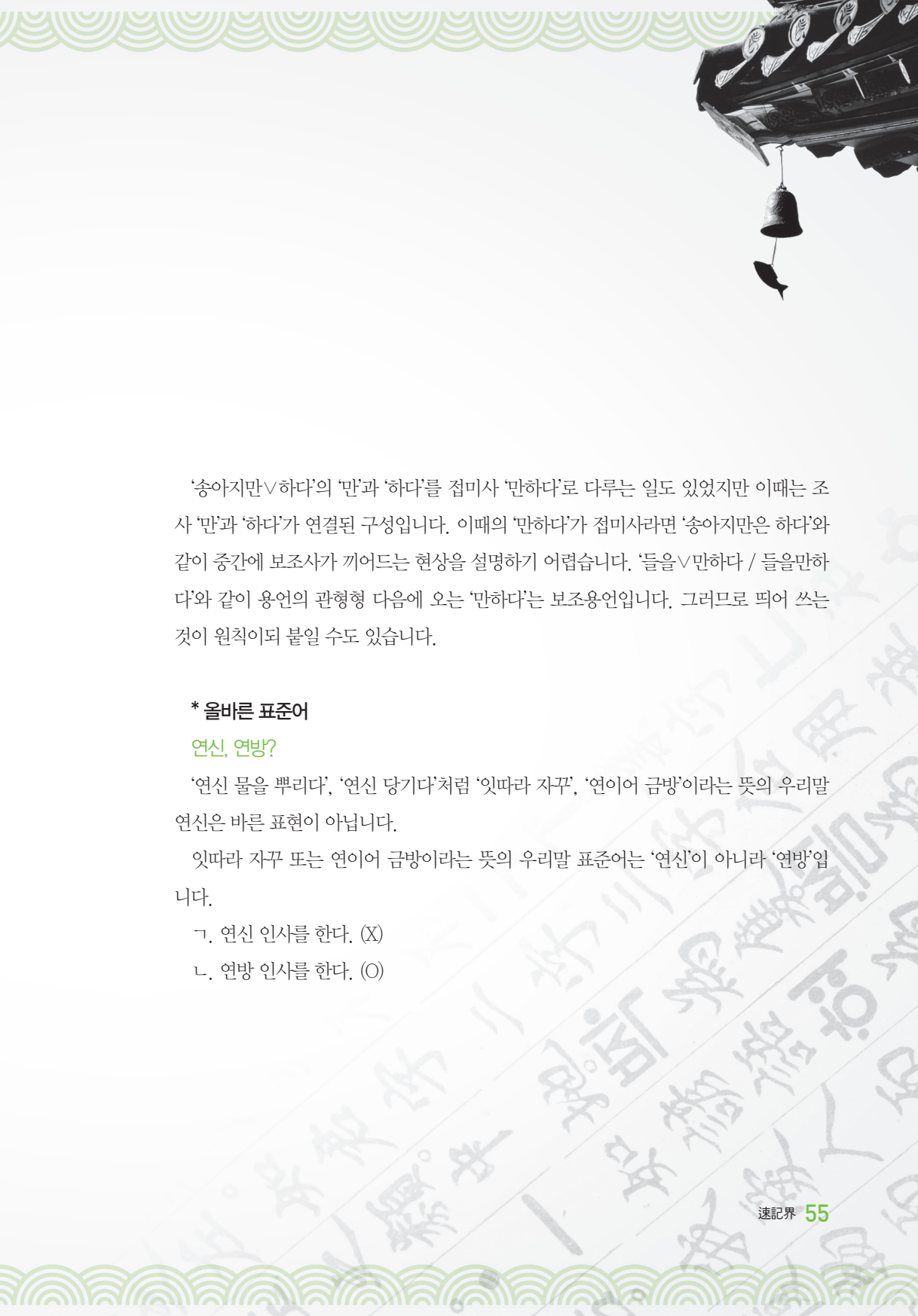
'만'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는 의존명사입니다. 이때는 주로 '만에', '만이야'의 꼴로 쓰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 십 년 만에 만난 친구
- 이게 얼마 만이야.

다만 '정말 오랜만이군.'이라고 할 때는 '오랜'√'만'으로 띄어 쓰지 않습니다. '오래간만'의 준말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만'과 '하다'가 연결된 구성은 두 가지로 쓰입니다.

- 강아지가 송아지만√하다.
- 음악이 들을√만하다 / 들을만하다.



‘송아지만▽하다’의 ‘만’과 ‘하다’를 접미사 ‘만하다’로 다루는 일도 있었지만 이때는 조사 ‘만’과 ‘하다’가 연결된 구성입니다. 이때의 ‘만하다’가 접미사라면 ‘송아지만은 하다’와 같이 중간에 보조사가 끼어드는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들을▽만하다 / 들을만하다’와 같이 용언의 관형형 다음에 오는 ‘만하다’는 보조용언입니다. 그러므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되 붙일 수도 있습니다.

#### \* 올바른 표준어

##### 연신, 연방?

‘연신 물을 뿌리다’, ‘연신 당기다’처럼 ‘잇따라 지꾸’, ‘연이어 금방’이라는 뜻의 우리말 연신은 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잇따라 지꾸 또는 연이어 금방이라는 뜻의 우리말 표준어는 ‘연신’이 아니라 ‘연방’입니다.

- ㄱ. 연신 인사를 한다. (X)
- ㄴ. 연방 인사를 한다. (O)



## 제 18회 속기학술세미나를 다녀와서

권오정



속기계와 인연이 별로 없던 내게 속기학술세미나 후기를 통해 드디어 속기계에 내 글이 올라갈 기회가 생겼다. 입사 후기도 내 글만은 속기계에 오르지 못하고 갱지로 된 속기협회 당일 총회자료 맨 뒤페이지 실려서 총회에 참석한 여러 속기 선배님들의 감동어린 뜨거운 눈시울을 바라보는 걸로 만족했었는데……

선발대로는 두 번째, 국회 의정기록과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속기학술세미나 선발대에 뽑히길 바란다. 무거운 짐을 최적의 장소에 빠르게 내려놓을 수 있는 빠른 상황판단능력과 아무리 힘들어도 웃을 수 있는 긍정적 마인드, 준수한 외모,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음주실력이 갖춰져야만 후보군에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선택이 되고 후기까지 쓰게 되어 괜히 또 한번 뭔가 특별하게 선발된 기분으로 이 글을 쓴다.

제18회째를 맞는 속기학술세미나의 장소는 강원도 춘천시에 소재한 라데나 리조트였다. 선발대 멤버들은 전날 출발하게 되어 1박을 더 하게 될 곳. 도착해 보니 넓은 야외 행사장이 일단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유럽에 온 듯 서구적으로 디자인이 된 화려한 객실 건물, 거기에 넓은 호수까지 있는 곳 이었는데 산 중턱쯤 자리를 잡은 한적한 곳이어서 주변 공기도 무척이나 맑았다.

드디어 선발대의 임무가 시작되었다. 선발대라는 게 전날 가서 먹고 놀고 다음날 해장하면서 총혈 된 눈으로 본진을 맞는 단순한 일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다. 하지만 선발대는 객실에 예약은 모두 꼼꼼하게 됐는지, 인원수와 객실을 일일이 다 확인하며 수를 다시 한번 맞춰 보고 본관 프린트와 행사 당일에 일어날 이십여 가지가 넘는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며 체크하고 혹시 만취하신 선배님들을 위해 객실 위치를 손바닥 보듯 파악하고 갑자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비한 비상약, 선배님들께서 우리 선발대에게 필요한 것을 골랐을 때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최단 이동거리 등등 아주 복잡하고 디테일하게 직접 술을 마시며 시뮬레이션을 해 보는 아주 고되고도 반복적인 일을 한다.

이번 선발대에 가서도 사업부장 선배님, 회원부장 선배님과 선발대 멤버들은 몇 번인지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수없는 확인 또 확인 끝에 자체적으로 오케이 사인을 내고 만족할 수 있었다.

드디어 세미나 당일 본진이 도착하고 더욱 바빠지기 시작했다. 반가운 얼굴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한다. 지방의회 선배님들이 매년 가져오시는 지역 특산물을 하나씩 나르며 행복할 저녁시간을 상상하기도 한다.



행사가 시작되고 주제발표가 시작됐다. 제1주제는 구기성 정무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의회운영 및 의사절차'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다. 의사국장님 출신이신 수석님께서서는 속기학술세미나에서도 속기와 직접 관련되는 의사절차를 여러 가지 예를 구체적으로 드시며 말씀해 주셨다. 우리 국회뿐만 아니라 세미나에 참석한 속기사들에게는 더욱더 피부에 와 닿았으리라 생각되었다.

그리고 잠시 후 제2주제 발표가 시작됐다. 속기사라면 누구나 관심이 갈 만한 주제였다. 이상윤 산업의학 전문의님께서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과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속기를 오래하신 선배님이라면 고질병이자 직업병이라 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든다. 실제로 적지 않은 선배님들께서 이런 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계신다. 십몇 년이 지난 후 내 얘기도 될 것 같아서 얼른 볼펜과 메모지를 꺼내 중요한 몇 가지를 적어 보니 어느새 모든 주제 발표가 끝이 났다.

역시 세미나의 백미는 역시 2부 행사.

이번에 라데나 리조트에서는 야외 바비큐를 메인 메뉴로 해서 뷔페식으로 많은 음식들이 먹음직스럽게 차려져 있었다. 비가 살짝 내려서 구석구석에 물안개가 걷히지 않은 호수를 바라보며 즐기는 저녁식사는 마치 연출된 장면 같은 느낌마저 들게 했다.

이 시간만큼은 빈 컵 하나만 들고 어느 테이블에 가도 모두 반갑게 맞아준다. 그리고 금세 여러 가지 얘깃거리가 생긴다. 이유는 단 하나, 대한민국에서 속기사란 직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런 분위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첫날 공식적인 행사가 끝나고 하나 둘 객실에 올라가는 시간인데도 각자의 방은 몇 호인지 잊혀지고 서로 어우러져 앞으로 속기가 더 발전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토론도 이루어지고 전국 각지의 지방의회, 카스협회 등 각기 다른 곳에서 일하는 선배님들의 일하는 환경에 대한 얘기를 들으며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며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또 각기 속해 있는 기관의 속기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들으며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한잔 또 들이키며 이야기꽃을 늦도록 피워 나갔다.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자는 등 마는 등 아침이 되고 또 다시 일정은 바쁘게 돌아갔다.

둘째 날은 점심식사 후 김유정 문학촌을 관람하는 일정이었다. 학창시절 시험공부를 위해 무조건 외우려 했던 김유정 시와 소설이 생각났다. 그의 생각과 기념관을 둘러보고 삼삼오오 모여 사진을 찍으며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을 아쉬워했다.

김유정 문학촌 관람을 끝으로 그렇게 제18회 속기학술세미나의 모든 일정이 끝이 났다. 미처 얘기하지 못했었고 좀 더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못 했던 분들이 내년을 기약하자며 악수를 청해 오셨다.

속기학술세미나란 나에게 그동안 잊고 지냈던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시간인 것 같다. 언제부 터인지 출근과 퇴근이 반복되는 일상이 계속되면서 내가 속기사란 걸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전국의 속기사들이 모이는 이 행사를 통해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그리고 1박 2일이란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이지만 회사에서 얼굴 마주치면서 인사만 했던 선배님들께 밥 한 번 사달라며 조를 수 있는 시간도 주고 과장님께 조금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도 만들어 주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도 내가 열망한 이곳에서 일할 수 있는 것과 속기사란 직업을 갖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느끼면서 내년 세미나 땀 조금 더 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다짐해 본다.





## 신임 관리자 교육을 끝내고

한순덕



신임 관리자 교육을 끝내고 새로 임용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 그냥 무조건 앞만 보고 달리던 기차가 갑자기 멈춰버린 느낌이다. 50이 넘은 지금, 승진은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 승진 기회가 너무 어렵게, 늦게 오는 만큼 절실했다. 의미를 생각할 계제가 아니었다. 그건 무조건 잡아야 하는 절실함 그 자체였다.

그러나 이제 무언가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고, 설레고 부푼 마음으로 기뻐하기에도 뭔가 먹먹한 심경이라고 할까. 우리에게겐 기회가 너무 늦게 온다는 생각에,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서 묵묵히 자기 계발에 힘쓰는 후배·동료들 생각에 마냥 좋지만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마음이 아릿하다고 할까.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이 직장에 대한 감사함을 매일매일 간절히 느끼고 있다. 내가 선배, 동료, 후배들에게 받은 만큼 지금 할 수 있는 건 무얼까 많은 고심을 해 보기도 한다. 경쟁사회 속에 개혁과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도 절감하고 있다.

그러면서 희망해 보기는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듯 우리도 흘러갈 곳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흘러갈 곳이 없이 고여 있는 물에서 맑은 물이 항상 샘솟지도 않지만, 샘솟은들 그 맑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도 좀 더 일찍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이렇게 침체되진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정말 신바람 나게 일하고 싶고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 정말 새롭게





변하고 싶다.

어쨌든 설렘이나 기쁨보다는 약간은 지치고 무거운 기분으로 교육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번 교육생은 일반승진이 6명이고 입법고시가 18명, 변호사 특채가 4명 해서 총 28명이었다. 일반승진을 뺀 나머지는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쟁쟁한 실력만큼 상큼한 젊음을 뽐내고 있었다. 주눅 들기에 충분했지만 교육생 모두가 밝고 쾌활해서 같이 교육받는 동안 내내 즐겁고 행복했다.

이번 교육은 특히 현장 중심 교육 위주로 편성되어서 일주일에 한 번은 1박 또는 2박의 지방 합숙 교육을 받았다. 합숙교육으로 인해 짧은 시간이지만 교육생 모두가 좀 더 친밀해질 수 있었던 것 같다. 같은 국회 직원이라는 동료 의식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현장 훈련으로 유럽 주요 국가의 의회를 방문하여 의회제도에 대한 운영 실태를 공부하는 기회를 가졌다.



### '무덤에서 요람까지'의 스웨덴

해외연수 첫날 늦은 밤에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도착하였다.

스톡홀름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의 하나로 '물 위의 아름다움'이란 이름이 늘 따라다닌다고 한다. 아름다운 숲 속에 드문드문 자리 잡은 예쁜 집들은 그림 그 자체라는 느낌이 들었고 스톡홀름 도시는 중세풍의 디자인이 독특한 건축물,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들로 고풍스럽고 품격 높은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다.





제일 먼저 대사관을 방문하여 스웨덴에 대해서, 그리고 한·스웨덴 관계에 대해서 개략적인 브리핑을 들었다. 경제, 환경 및 에너지, 문화 면에서 양국 간 교류 협력을 하고 있다.

스웨덴 의회는 의원 수는 349명이고 의장 1인과 부의장 3인을 두고 있으며, 의원 349명 중 반 정도가 여성 의원이고 사회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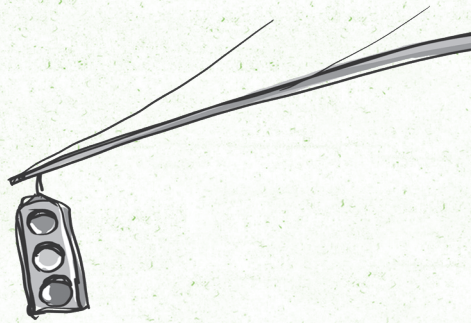
주당 총수도 여성이라고 한다. 방문할 당시에는 총선으로 인해 선거벽보가 길가에 붙어 있었는데 총선에서 사회민주당이 이길 경우 최초 여성 총리가 탄생한다고 한다. 단원제이고 정당은 총 7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의회 건물이 발틱해와 벨라넷 호수, 즉 바닷물과 호수물이 만나는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 대립되는 의견을 조화하는 장소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얘기되고 있다고 한다.

상임위는 총 1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 상임위는 최소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상임위에서 위원들 간 토론 후 상임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는 상임위 토의 후 상정되는 안건을 최종 투표한다.

스웨덴의 우리 교민은 약 1500명 정도 되고 다양한 직업과 안정적인 생활을 한다고 한다.

대사관에 이어서 스웨덴에 발달되어 있는 옴부즈만을 방문하였다. 옴부즈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스웨덴 옴부즈만의 구성과 활동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고, 독립적으로 행정기관에 대한 견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았다.





### 산타클로즈의 나라 핀란드

너무 짧은 일정이었던 스톡홀름에서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실자라인으로 핀란드 헬싱키로 출발하였다.

먼저 헬싱키에 도착하여 국회의사당을 방문하였다.

국회 본회의장은 전자투표 장치가 되어 있다. 각 의원들 자리에 모니터가 있어서 어떤 법안이 들어왔는지 볼 수 있고 바로 투표를 해서 1~2분 안에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모든 회의 내용은 다 기록이 되고 회의록을 작성해서 회의가 끝나고 2시간 안에 일반인들이 볼 수 있다고 한다.

핀란드 의회는 단원제로 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2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당은 중도, 국민연합, 사민 및 5개 군소 정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여성의 정치 참여도가 높아 1994년에는 여성 국회의장과 여성 총리로 구성되기도 했고 현재의 대통령도 여성이다.

의원내각제인 핀란드에서는 행정부보다 의회가 실질적인 힘을 행사한다. 핀란드 의회는 산업부, 교육부 등 지식기반 경제의 구체적인 계획을 실천하는 행정부를 총괄하고 있다.

핀란드는 국가별 반부패지수가 세계에







서 가장 높다. 2003년에는 총리가 국회에서 미심쩍은 거짓 말을 했다는 이유로 두 달 만에 사임한 예가 있었다고 한다. 우리로서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얘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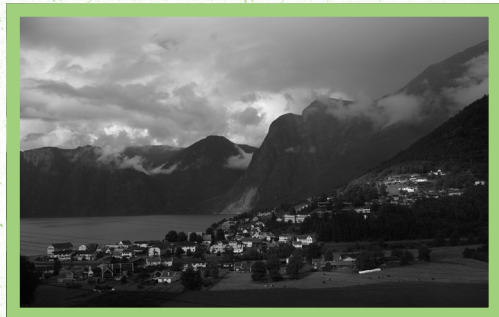
### ‘바이킹의 후예’ 노르웨이

헬싱키를 출발하여 노르웨이 오슬로로 향했다.

오슬로에서는 국회의사당이 공사 중인 관계로 대사관을 방문하여 노르웨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노르웨이는 정부 형태가 내각책임제로 이루어져 있고 의회는 단원제로 16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4년이다. 기본 형태는 단원제이나 입법 및 헌법 규정과 관계되는 사항을 심의할 때는 상·하원으로 분리되며 일상적으로는 전체 의원이 함께 모여 의사진행을 한다.

여성 의원이 총 66명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1인당 GDP가 약 9만 5000불로 세계 2위의 부국이며 3대 석유 수출국 및 어업 강국이다. 특히 양성 평등 및 세계적인 복지 제도를 구현하고 있으며 직장에서 남녀가 평등한 대우를 받는지를







감시하는 평등지위옴부즈만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여성 국회의장 여성 총리 등을 배출하기도 했으며 2008년에는 세계경제포럼 남녀평등지수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또한 주요 기업 이사진은 40% 이상 여성할당의무를 법제화하고 있는 등 양성평등의 모범적인 형태의 복지국가를 실현하고 있다.

여성의 출산과 아동·실업에 대한 복지 제도 또한 정말 잘되어 있어 가장 살고 싶은 나라로 손꼽을 만하다고 생각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 해외연수를 끝내면서 세상은 넓고 할 일도 많다는 말이 실감났다. 지금도 늦은 건 아니라는 생각과 인생 이모작을 위해서도 미리 자기 계발에 힘써야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그리고 우리 후배들에게는 좀 더 젊은 나이에 승진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서 창의성도 무너지지 않고 쟁쟁한 실력도 맘껏 펼칠 수 있는 장이 주어지기를, 그래서 조직 전체가 활력이 넘치고 그들에게도 신바람 나는 직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그 앞이 안 보일지라도, 그리고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집시다!

## 좋은 날은 반드시 옵니다

김희숙



매일 날씨가 좋으면 사막이 되고 맙니다.  
비바람은 거세고 귀찮은 것이지만  
그로 인해 새싹이 돋습니다.  
내 앞에 비바람이 불 때  
나의 소임이 무엇인가를 되뇌이면서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은 반드시 옵니다.

-전대련 전 YMCA 회장의 퇴임사 중에서

우연히 이 글을 읽었을 때 코끝이 찡했던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인생에 좋은 날은 반드시 온다’ 이 말을 믿었던 것일까? 난 그렇게 내 인생 앞에 다가올 비바람, 그 곳은 날씨를 예상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따뜻한 희망을 품게 되었다.



### 처음, 익숙한 단어

내가 국회속기사라는 직업을 알게 된 것은 2006년 9월, 회사를 그만두고 내 인생을 되돌아 보면서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계 기업에 취업을 했지만 그곳에서 하는 일들은 나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했다. 업무 만족도가 낮았던 나는 점점 의욕을 잃었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몇 달간의 휴식을 통해 그간의 인생을 돌아보며 평생을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아보았고 그러던 중 국회속기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원에 가서 상담도 해 보았지만 공무원 공부와 난생 처음 접한 속기를 병행한다는 것은 나에게 또 다른 두려움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의 선택으로 인해 인생을 돌아가는 길을 걷게 되었던 것 같다.

그렇게 대한민국 우울한 잿빛 세상의 상징인 공무원 수험 생활에 발을 담그게 되었고 평소 꼼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여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아마도 지금의 국회속기사의 길로 나를 이끌어 줄 운명의 장난이 아니었을까.

그것을 계기로 나는 미련 없이 수험 생활을 접었고 2008년 10월, 다시 국회속기사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늦은 나이였기에 처음엔 사무직 아르바이트를 하며 속기학원을 다녔다. 일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시간의 절실함과 배고픔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혼자 떡볶이도 먹어 보았다.

일을 그만둔 후에는 속기를 마치 행정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처럼 치열하게 하였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저녁 시간대가 아까워 저녁엔 아예 집에 와서 연습을 하였다. 한쪽 어깨에는 가방을 그리고 또 한쪽 어깨에는 무거운 카스 기계를 짊어지고 거의 매일같이 내 몸 하나 세





우고 있기조차 힘든 출퇴근 전철 안을 직장인의 신분인 아닌 학생의 신분으로 끄덕대며 다녔다.

연습량이 많았기에 몸은 무척 힘들어졌고 결국 처음으로 숨에 가서 안마라는 것을 받아 보기까지 했다. 그리고 보니 속기를 하면서 내 인생에는 ‘처음’이란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

### 소중한 경험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1급 자격증을 손에 넣는 날이 왔다. 하지만 자격증 시험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학원 원장님으로부터 하나의 제안을 듣게 되었다. “아르바이트 자리가 하나 있는데 이름만 들어도 ‘우와’ 할 만한 곳이다. 해 보지 않겠니? 경험도 중요하지만 이력서의 경력사항 채우기에도 이런 네임 밸류를 가진 만한 곳은 없다.”라면서 기관 이름은 알려 주지 않으시면서 의향부터 물어보시는 것이었다.

시험을 일주일도 채 앞두고는 나는 나의 속기 인생에서 중대한 결정을 해야 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였다. 종래의 관행으로는 한글속기자격증 시험 시행 후 2~3개월 안에 국회시험이 있었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거란 생각이 가장 먼저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하지만 나의 의지만 강하다면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고 오로지 국회만 준비하기보다는 실무 경험이 있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 원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서울대 교육속기사(전문도우미)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육속기는 청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강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속기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처음으로 접한 교육속기 실무를 하던 날을 난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1학기 종강





바로 전 수업부터 투입이 되었던 나는 한 남학생의 수업을 맡게 되었고 첫 수업이라 무척 긴장이 되었다.

속기를 배워 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학원에서조차도 연습을 하거나 혹은 시험을 볼 때 주변에서 누군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평소에 잘 치던 것도 긴장을 해서 오타가 나고 형편이 없어진다. 그런데 그날은 옆에서 학생이 내가 치는 내용을 대놓고 보는 것이었다. 그 학생에게는 당연한 일이 나에게서는 긴장으로 다가왔기에 많이 떨렸고 점점 상기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속으로 “잘 치지 못해 내가 당할 창피함, 그 이기심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 학생이 일반 학생들처럼 수업을 100% 소화할 수 있게, 진심으로 이 학생만을 위해서 떨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라고 계속 주문을 걸었다. 그리고 나니 훨씬 안정이 되었다. 그날 나의 머릿속은 오로지 그 학생뿐이었고 그렇게 나는 교육속기사로서의 신고식을 치렀다.

이렇게 시작된 서울대에서의 교육속기는 정말 매일 매일이 보람이고 감사함이었다. 내가 맡은 학생들은 참 예의 바르고 밝고 긍정적인 학생들이었고 도저히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런 장애를 딛고도 서울대에 들어온 그들이 존경스러웠다. 그중 한 친구는 전혀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 2급 학생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친구는 말을 무척이나 잘했다. 보통 듣지 못하면 말도 잘할 수가 없는데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절대 수화를 하지 못하게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구화(口話)를 하도록—물론 서울대 청각장애 학생들은 다 구화를 사용한다—훈련을 받아왔다. 그래서 당시 내가 지원해 주던 학생들 중 말을 제일 잘했다. 난 그 학생이 항상 자랑스러웠고 그 학생의 긍정적인 마인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성실함 등 모든 점이 내가 배울 점이였다.



### 백찬 감동

그렇게 서울대에서의 교육속기가 익숙해질 즈음에 2010년 국회속기직 채용공고가 났다. 공고를 처음 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다. 드디어 내가 있어야 할 곳에 가야 할 때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난 일과 공부를 병행하기 시작했다. 거의 한 달 반 동안을 독서실을 끊어 필기시험 공부에 매진했다. 그렇게 1차 필기시험 합격!

다음 관문은 실기시험이었다. 학교 수업이 없는 시간에 툼툼이 학원을 왔다 갔다 하며 준비했다. 하지만 실기시험은 생각보다 무척 어려웠다. 특히 연설체는 체감속도가 마치 340은 되는 것 같았고 다뤄 보지 않았던 이슈가 나오는 바람에 오타 연발이었다. 때문에 시험을 다 치르고 나서는 한숨밖에 안 나왔다. 그때의 속기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창피하다. 하지만 모두에게 어려웠던 탓인지 2차 실기시험도 합격!

마지막 관문인 면접이 남았다. 면접 역시 학교를 오가며, 집에 와서 열심히 자료 수집도 하고 공부도 하며 준비를 했다. 운이 좋게도 면접은 생각보다 평이했었던 것 같았다. 그렇게 나는 기분 좋게 면접까지 마무리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발표를 기다렸다.

처음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는 실감이 나지 않았다. 마냥 상상만 했을 때는 듣자마자 울음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사실 시험이 있기 한 달 전부터 유난히 예전에 행정직 시험을 준비하던 때의 생각이 많이 났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시험을 보고 나서 좋지 않은 예감이 든 나는 도저히 집에 갈 수가 없었다. 발걸음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아 시험을 봤던 학교 근처에 앉을 만한 곳을 찾아 헤매다가



어느 서점에 들어갔고 그곳 벤치에 앉아 멍하니 그렇게 한 시간을 있었다. 그런데 서울대에 근무하던 중 학생에게 줄 선물을 사러 우연히 들어간 서점이 바로 그 장소였던 것이다. 벤치를 보면서 그때 생각이 났고 순간 설움이 북받쳐 올랐다. 그 설움과 함께 한편으로 이 쓰라린 상처들을 이제 행복한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는 날이 내게도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었던 기억이 난다.

그렇게 나는 국회에 들어왔다. 업무를 배우기 좋은 시기에 입사한 덕에 현재까지 차근차근 배워가고 있는 중이다. 벌써 한 번의 임시회를 겪었고 이제 또 한 번의 임시회를 앞두고 있다. ‘이번에는 완벽하겠지’ 하고 내는 원고에는 늘 주무님의 예리한 수정들이 도사리고 있다. 완벽이란 것을 기대하기에는 나는 아직 많이 부족한 신입이다.

하지만 그래도 내게는 사랑하는 속기가 있고 그 속기와 평생을 함께 하고 계시는 든든한 선배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동기들이 있다. 이런 환경에서 열정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한다면 그 부족함도 저절로 채워질 것이다.

처음으로 내게도 천직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 준 사랑하는 속기를 위해 지금 이 순간 나는 또 하나의 주문을 건다.

“회의가 10시에 시작한다면 난 9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 새로운 시작

### 이상욱

긴 시간 국회를 준비하면서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합격수기를 쓰는 상상을 하면서 동기부여를 하곤 했다. 합격한 지 벌써 네 달이 되어가는 이때에 합격수기를 쓰려고 하니 잠시 잊고 있었던 수험생 시절의 열정이 생각나 다시 가슴이 뜨거워진다.

끈기 있게 노력하여 무엇인가 성취했던 적이 나에게 있었던가……

지금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의 가장 큰 성과이고 30년을 살면서 유일하게 무엇인가를 끝까지 해 본 것이 국회속기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던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돌이켜 보면 국회속기사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 많은 경험을 해야 했던 것 같다.

식품학을 전공한 나는 군대 역시 경력을 쌓는 게 좋을 것 같아 김치공장 실험실의 병역특례 요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3년 동안 김치공장의 배추냉장고 안에서 근무하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결론은 더 이상 좁은 공장 안에서 평생을 보낼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좀 더 큰 세상으로 나가서 전문직업을 갖고 싶었다. 그런데 제대하고 얻은 직장이 LCD 공장이었다. LCD 공장이 몇 만 평 규모였으니 좀 더 큰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 했던 나의 꿈은 그래도 반은 이뤄진 셈이었다.

허나 근무지는 또 좁은 공장이었다. 그래도 비교적 월급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위안 삼으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었지만 그곳에서의 삶은 3주일에 한 번 휴일이 있었고 그나마 쉬는 날이나 일과 후에는 각종 체육행사와 술자리가 기다리고 있었기에 좀처럼 쉬는 시간이 생기지 않았다. 사람이 이렇게 술만 먹다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만뒀다.

그런데 무작정 퇴사를 하고 보니 막상 할 것이라곤 노동밖에는—한때는 좁은 공장에서 뛰쳐나와 트럭운전을 하며 전국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생활을 동경하던 시절도 있었지만—없었다. 그렇게 인생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던 시기에 우연히 인터넷 검색창에 유망직종을 검색하며 속기사라는 직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속기사가 뭔지는 몰랐지만 끝에 ‘샤’자가 들어가는 속기사라는 이름 자체는 좀 있어 보였다. 그리고 속기광고의 내용은 더 있어 보였다.

1.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유망직종
2. 최소 월수입 500만 원 보장





### 3. 6개월이면 자격증 취득

#### 4.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으므로 시간과 경비 절약

하루라도 빨리 백수를 탈출하고 싶었던 나는 그 광고를 그대로 믿고 싶었다. 그리고 다른 경쟁자들이 알기 전에 빨리 시작하고 싶어서 바로 광고에 나와 있는 속기회사에 상담전화를 했다. 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속기회사는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고, 몸이 후끈 달아올라 있었던 나는 당장 집에서 제일 가까운 영등포 카스속기학원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그렇게 나의 속기 인생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국회는 특별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하여 엄두도 못 내고 우선 자격증부터 따고 시작하자는 마음에 학원을 등록했다. 급하게 시작한 속기공부는 생각보다 쉬운 것이 아니었다. 우선 소질이 없었다. 그런 상황에 자판 외우랴, 약자 외우랴, 활용까지 하랴 머리는 복잡하고 몸은 쑤시고 눈은 쾅해졌다.

하나 그대로 관둔다면 나는 또다시 예전의 끈기 없는 나로 돌아가는 것이었기에 이를 악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습에 몰두했다. 그렇지만 성과는 없었다. 이런 나를 보고 원장님은 ‘성실한 바보’라고 했다. 같은 날 등록한 옆자리의 아이는 ‘게으른 천재’라고 하시면서…… 아무튼 결국은 성실한 바보가 이긴다고는 하셨다.

그렇게 시작한 속기 공부 1년 4개월 만에 1급 자격증을 땀다.

그러나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자격증을 땀지만 자막방송을 제외하면 남자가 갈 수 있는 곳



은 거의 국회밖에 없다고 봐야 할 정도로 갈 곳이 없었다. 솔직히 공부하기 싫어서 시작한 속기였는데 다섯 과목이나 되는 공부를 해야 한다니 고민이 되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도 막막했고 과목들도 모두 접해 보지 못한 낯선 과목들이었다. 게다가 영어는 울렁증까지 있었다.

하지만 이미 속기계에 발을 들였는데 다시 발을 빼기엔 너무 멀리 왔음을 알았다. 그때 나이 26세, 느긋하게 30살에만 들어가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했다. 그런데 진짜 30살에 합격했다. 사실 급한 마음을 다잡고 여유를 갖기 위해 한 생각이었는데 정말로 현실이 되어 버렸다. 역시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결과를 낳는다'는 교훈이 괜한 말이 아니었다.

시작은 순조로웠다. 6개월가량 필기공부를 하고 국회시험을 쳤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면접까지 가 버렸다. 그 당시 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특별한 하자만 없으면 면접에서는 크게 문제 없을 거라는 말에 나는 문제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자신 있게 면접에 임했으나 떨어졌다. 하지만 불합격에 대한 실망감보다는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더 컸기에 한 번 더 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더욱더 공부에 매진했다.

그리고 이듬해 시험, 면접까지 갔던 경험에 자만했던 탓인지 너무 긴장했던 탓인지 속기자판은 만져 보지도 못하고 필기에서 허무하게 탈락을 했다. 불합격 통지를 듣고 나를 지탱하던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은 홀랑 사라지고 속기자판에 손을 올릴 힘조차 없을 정도로 지쳐버렸다. 오로지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정말 막막함 그 자체였다. 주변인, 잉여인간, 패배자 등등이 모두 나를 위한 말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며칠을 방황하며 이제는 정말 노동자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인가 하고 고민하던 순



간 이대로 포기하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정말 후회할 것만 같았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20대의 마지막 힘을 쥐어짜 보자,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노동자가 되자는 마음으로 다시 책을 펼쳤다.

역시 마음가짐을 다르게 먹어서인가 2010년 11월 드디어 합격의 소식이 나에게도 전해졌다. 정말 기쁘고 내 자신이 대견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과연 내가 정말 국회속기사가 된 걸까 자꾸만 의심이 들었다. 불안한 마음에 웬지 내가 모르고 있는 어떤 신분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목을 잡을 것만 같았다.

수험생 시절 받았던 스트레스가 나도 모르게 몸에 남아 있었는지 신입교육을 받으러 가기 전날 밤 나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필기시험을 치는 꿈을 꿔고 잠을 자면서도 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3주간의 신입교육은 마치 3일같이 빨리 지나갔고 내가 합격했다는 실감이 들게 해 주는 기간이었다. 지금 생각하니 선배님들이 왜 그렇게 교육 기간이 가장 행복한 시절이니 맘껏 즐기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제는 알 것 같다.

3주간의 교육기간이 끝나고 2011년 1월 3일, 드디어 의정기록과에 배치를 받았다.

처음 나의 책상을 봤을 때의 기쁨과 감동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지금도 앉아 있는 사무실의 내 책상을 보고 있노라면 행복하기 그지없다. 역시 행복은 특별한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아직은 배울 것도 많고 뭘 해도 어설픈 신입이지만 나는 지금 내가 바라고 꿈꿔온 국회공무원의 신분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 수험생 시절 버스에서 창밖을 바라볼 여유도 없이 책만 보고 밥 먹는 시간도 아껴서 공부하며 국회에 들어오기 위해 돈, 시간, 웃음, 친구 등등 많은 것



을 빼앗겼지만 지금은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을 얻었다. 지금 이 순간이 내가 그토록 꿈꿔 왔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출근시간 9호선의 혼잡함도 행복하다.

만물이 소생하는 4월의 따스한 햇살 아래 지금 느끼는 이 행복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수험생 시절 느꼈던 초조함과 불안함, 시험에 떨어졌을 때의 절망감과 막막함, 그리고 합격했을 때의 기쁨과 벅참을 최고의 속기사가 되기 위한 원동력으로 삼으며 늘 신입 같은 자세를 잃지 않는 국회속기사가 될 것이다.



## 16개월 동안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

이세림(한글속기 국가기술자격증 1급)

2011년에 접어든 게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글속기 국가자격시험이 있는 4월이다. 지난해 4월 25일 한글속기 1급, 2급 자격시험을 보던 순간이 떠오른다. 이 합격 수기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2009년 1월에 속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때 당시 1년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 진학을 할지 아니면 새로운 직장을 구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직장을 새로 구하더라도 단순한 사무 업무보다는 전문적인 분야의 일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직업을 인터넷을 통해 알아 보던 중 속기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다가 속기자격증을 취득하면 공무원이 쉽게 될 수 있다는 정보를 접했다. 요즘 공무원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매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속기자격증이 보통 단기간에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도 아닐 뿐더러 속기로 공무원이 되는 길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속기로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속기를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감이 떨어지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다. 하지만 속기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1급을 취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속기자격증 1급을 따기까지의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말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튼 속기자격증을 취득하기로 마음을 먹고 좀 더 자세히 속기에 대해 알아 보던 중 속기키보드는 CAS와 소리자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을 하는 데 속기키보드가 어느 것이냐 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기종에 대해 모두 편견 없이 알아 보았고 CAS 속기키보드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취업률과 국가자격시험 합격률이 더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속기 기종을 정한 후 집과 가장 가까운 강남속기학원에 등록하고 속기 공부를 시작하였다.

처음에 속기키보드를 배우기 시작할 때는 무언가를 새롭게 배운다는 즐거움에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하지만 그 즐거움도 잠시뿐이었다.

그 당시 오전에는 6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후에 속기학원에서 3~4시간 정도 연습을 했다.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학원에서 장시간 연습을 하려니 집중이 잘 안 되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연습시간도 줄어들게 되고 학원을 빠지는 횟수도 늘어나게 되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원장님의 '나는 속기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방법이 없다. 아주 처절한 마음이 없으면 그 어느 것도 성공할 수 없다'는 말이 생각났다. '그래, 속기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난 끝이다!' 하고 마음을 다잡고 나니 학원에서 160자까지는 낭독 테스트를 봐도 점수는 그런대로 잘 나왔다.

그러나 문제는 170자에서 발생했다. 바로 슬럼프가 찾아온 것이다. 국가자격시험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170자에서 190자까지 정말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

그때 나의 문제는 바로 약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심지어 170자를 하고 있음에도 '정치'라는 약어를 사용하지 않을 정도였으니 얼마나 약어를 활용하지 않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느린 속도에서는 독타로도 충분히 낭독을 따라잡을 수 있지만 높은 속도로 올라갈수록 약어를 활용하지 않고 독타만으로 속기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속기를 할 때는 독타와 약어 활용 이 두 가지 모두 잘 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그때부터 약어 위주의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 우선 자주 사용되는 활용도 높은 단어 위주로 연습을 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점수는 점점 안정되어 갔고 마침내 국가자격시험일이 되었다.

3급에 응시했다. 시험 전날까지는 전혀 긴장이 되지 않았지만 막상 시험 당일이 되니 너무 떨렸다. '오늘 내가 보는 시험은 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거치는 중간시험이니 너무 긴장하지 말고 학원에서 연습하던 대로 최선을 다하자.'고 마인드컨트롤을 하면서 첫 자격시험을 치렀다. 결과는 합격이었다.

약 8개월 만에 3급 국가자격증이라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얻으니 '그동안 내가 열심히 공부해 온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뿌듯했다.

요즘 취업이 어려운 것은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이고, 속기 분야는 상대적으로 나은 것 아닐까, 무엇보다 나는 이제 속기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지 않은가. 생각을 정리하고 다시 속기연습에 매진했다.

3급을 취득하고 나서는 왠지 더 자신감도 생기고 금방 1급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역시 1급 자격증을 따기란 3급 자격증을 따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라는 걸 곧 깨달았다.

270자에서 다시 한번 정체가 왔고, 또한 속기마당 카페 같은 곳에서 취업이 잘 되지 않는다는 비판적인 글들을 접하게 되었다. 정말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기였다.

국가자격시험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내가 과연 그 시험에서 1급 자격증을 합격할 수 있을까, 1급 자격증을 취득해도 취업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이라도 속기를 그만두고 다른 걸 알아 봐야 하는 건 아닌지 정말 이런저런 생각들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했다.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지금까지 속기를 배운 것이 너무 아까웠다. 또 취업이 안 된다는 속기카페의 글에 너무 영향을 받지 말자고 생각했다. 사람에 따라 취업이 빨리 될 수도 좀 늦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요즘 취업이 어려운 것은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이고, 속기 분야는 상대적으로 나은 것 아닐까, 무엇보다 나는 이제 속기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지 않은가…… 생각을 정리하고 다시 속기연습에 매진했다.



속기에 집중한 지 어느덧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드디어 운명의 그날이 다가왔다.

2010년 4월 25일!

국가시험을 보기 한 달 전에 있었던 협회시험에서 1급과 2급 모두 떨어졌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1급과 2급에 응시했다. 1급 시험 논설체는 그럭저럭 잘 따라 쳤지만 연설체 시험을 너무 못 본 것 같아 2급 시험이라도 합격해야 한다는 생각에 최선을 다해 2급 시험을 치렀다.

그로부터 한 달 뒤 2010년 5월 26일에 한글속기 1급과 2급 모두 합격했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발표를 보게 되었다. 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까지 1년 4개월간의 고생이 다 잊혀지는 순간이었다. 쉽게 취득할 수 없는 자격증이기에 때문에 더 뿌듯했다.

그 한글속기 1급 국가자격증 덕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속기사로 취업이 되어 발령을 기다리고 있다.

속기자격증 1급을 따기까지의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말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 승리자가 되기를 바란다.

## 집 들 이

### 손 상 범(전주시의회)

오랜만에 집들이에 초대를 받았다. 집에서 하는 진짜 '집'들이라는 것도 생소하려니와 그 집이 새로 분양한 으리으리한 아파트도 아니고 단독주택이라니 의아한 마음과 더불어 호기심이 일었다.

약속된 금요일 저녁 서둘러 퇴근을 하고 초대받은 집을 향해 네비게이션을 가동한다. 동·호수가 정확한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 찾아가는 것도 모처럼이었다. 아나나 다름까 목표점을 눈앞에 두고도 몇 바퀴를 빙빙 돌아 간신히 주차를 했다.

초대를 한 것은 대학교 후배.

후배는 다섯 살 난 딸아이와 함께 대문을 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너는 대세를 거스르고 웬 주택이냐.”

장난삼아 괜한 타박을 건네며 대문을 들어서자 기다랗게 이어진 자그마한 마당에 옹기종기 꽃들이 어슴푸레한 저녁놀 속에서 아름답게 흔들린다. 효린이라는 후배의 딸아이가 내 손을 잡아끌더니 꽃밭 앞으로 향했다.

“삼촌, 이게 제 꽃이에요.”

가만히 보니 노오란 튼リップ이다.

“오호라, 너와 꼭 닮았구나.”

아이가 배시시 웃으며 폴짝폴짝 뛰었다.

“효린아, 손 씻고 그만 들어가자. 이제까지 여기에서 놀고 있던 참이에요.”



그러고 보니 후배는 목장갑을 낀 채다. 꽃밭을 가꾸고 있던 모양이었다. 아이가 마당에 놓인 수도  
가에서 물을 틀더니 제 아빠와 함께 대야에서 자그만 손을 씻는다. 오래된 풍경처럼 정겹고 그리운  
느낌이다.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서기 전의 세대가 그러하듯 나 역시 어린시절을 주택에서 보냈다. 거창  
하지는 않았으나 단정한 양옥집에 바깥 화장실, 앞마당이 딸린 주택, 대청 같은 마루가 깔린 거실은  
구들장을 들이지 않아 겨울엔 추웠으나 여름엔 시원해 온 가족이 모여 잠들곤 했고 바깥 화장실을  
이용하느라 밤엔 무섭고 낮엔 찝찝했으나 또한 그 길목에 피어난 꽃과 나무를 구경하는 즐거움이  
있었다.

평생을 함께 사시던 할머니는 그 집을 몹시 사랑하셨고, 장 담글 철이 되면 앞마당에 솔을 걸고 공  
을 삶고 이웃까지 불러들여 잔치를 만드시곤 하셨다.

옥상에 떨어져 있는 다락으로 오르는 계단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놀이를 했던가. 명절 때 그 계단 층  
층이 놓인 음식들을 몰래 꺼내어 먹는 맛은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즐거움이었다.

무엇보다도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연이어 붙은 옆집 친구들과의 놀이다. 우리 두 집은, 옥상  
난간이 10cm 정도 차이로 이어져 있었는데, 우리는 용감한 체하느라 거기를 넘어 다니며 서로의  
집을 오갔었다. 가끔 거기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양쪽 집을 가르는 담이 내려다보였는데, 실은  
다리가 후들거리고 오금이 저렸음을 이제야 고백한다. 친구들 앞에서는 제법 씩씩한 체했지만 말

각기 사는 집마다 골목이 있어서 누구네 골목에서 노느냐는 또한 새로운 즐거움이었다. 우리는 물론 쌍둥이와 더불어 우리 두 집의 골목을 장악하고 흠장난이나 비석치기, 함정파기 등 각종 놀이를 펼치며 다른 골목 아이들을 받아 주거나 내쫓거나(장난 비슷하게) 하는 신나는 시간을 보내곤 했었다.

이다.

그 집에는 나보다 한 살 많은 누나와 동갑내기 쌍둥이 친구들이 살았는데, 우리는 옥상을 오가는 것도 모자라 담을 타고 뒷집까지 내려가거나 앞집으로 타 올라가는 장난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다 앞집에 살던 무시무시한 아주머니에게 혼꾸멍이 나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우리의 훈장처럼 동네 아이들에게 자랑을 늘어놓던 시절이었다.

요즘처럼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도무지 서로 어울려 노는 것을 보지 못한다. 세상이 각박해지기도 했으려니와 어울릴만한 공동의 공감대 없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각기 사는 집마다 골목이 있어서 누구네 골목에서 노느냐는 또한 새로운 즐거움이었다. 나는 쌍둥이와 더불어 우리 두 집의 골목을 장악하고 흠장난이나 비석치기, 함정파기 등 각종 놀이를 펼치며 다른 골목 아이들을 받아 주거나 내쫓거나(장난 비슷하게) 하는 신나는 시간을 보내곤 했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때 그 쌍둥이들이 이사 갈 때 왜 그렇게 대문 뒤에 숨어서 끝내 인사조차 건네지 않았는지 아쉬움이 든다.

그러한 추억이 살아있는 주택…… 후배의 집은 기억을 살아있는 현재로 만들어 주기에 충분했다. 리모델링을 했다고는 하지만, 옛 양옥집 양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마당으로 이어지는 베란다(일명 토방)와 계단 밑으로 뚫린 개구멍, 들어서면서 마주하게 되는 니스 칠한 나무 신발장 그리고 난로가 놓

여 있는 것이 다를 뿐인 마루의 거실. 그곳에 7~8인용의 테이블이 깔려 있고, 제수씨가 음식을 나르고 있었다.

“와, 음식을 직접 하신 거예요?”

“별로 한 게 없어요.”

호린이를 안아 주며 그녀가 웃었다. 아파트를 놔두고 주택을 선택한 부부답게 어딘가 닳아 있는 눈매다.

손님들이 연이어 들어섰다. 모두들 대학 때 동아리를 같이한 선후배 사이다. 우리는 맥주와 함께 제수씨가 마련한 음식을 맛있게도 먹었다. 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누군가 물었다.

“하고많은 아파트 놔두고, 시들어가는 주택을 산 이유는 뭐야?”

후배가 진력나도록 들은 질문이라는 듯 바로 입을 떼었다.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요. 거창한 한옥집이라면 더욱 좋겠지만, 이런 작은 주택이라도 집안 곳곳 우리 추억이 남을 것 같아서 택했어요.”

추억이라는 말에, 나는 어쩐지 목이 막혀 맥주를 들이켰고, 몇몇은 더욱 질문을 퍼부었지만, 오랜만에 찾은 누군가의 주택에서의 밤은 여행처럼 낯설고도 즐거운 시간이었음은 사실이었다.



추억이라는 말에, 나는 어쩐지 목이 막혀 맥주를 들이켰고, 몇몇은 더욱 질문을 퍼부었지만, 오랜만에 찾은 누군가의 주택에서의 밤은 여행처럼 낯설고도 즐거운 시간이었음은 사실이었다.

돌아오는 길에서 나는 생각했다. 우리 가족은 집이라는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추억을 만들고 있을까? 그저 먹고 자는 공간으로 치부되어 빨리 더 빨리, 넓게 더 넓게만을 외치고 있지 않았을까……

그날의 시간을 돌아보며, 나도 슬슬 단독주택이나 한옥 짓기에 도전해야 하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해 본다.





## 먼 나라에서 온 선물

본 협회로 필라델피아에 계신 서길천 회원님께서 우연히 발견한 미국 속기자판인 리포터가 소포로 왔습니다.

아래 글은 서길천 회원님께서 보내신 편지글과 협회 이사장님께서 보내신 답글입니다.

속기계 담당하시는 분께

본인은 한국을 떠난 지 32년째 되는 필라델피아에 거주하고 있는 서길천입니다.

속기계가 발간될 때마다 책자를 보내 주시는데, 나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고 있다가 보내 주시는 책자를 받을 때마다 나의 존재를 다시 되새기게 되는 것 같아서 스스로 자부심을 느낍니다.

속기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 골동품을 나만 보고 감상하는 것보다 제 위치 찾아가서 혹시 조그마한 보탬이 될 것 같기에 낡은 이 물건을 속기협회에 보내드립니다



속기기계

우연히 시간이 날 때 가끔 골동품 전시장에 들르는데, 나도 속기인의 일인이었기에 속기 타자기(구형)가 있기에 나도 모르게 흥정을 해 가지고 집에 들고 왔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옛날로 돌아가 옛 생각에 빠짐을 느낄 때마다 아직도 속기사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고국을 떠나 해외에 나와 있는 동안 몇 차례 속기인이 속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때마다 속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럽고 위대하게 보이는지…… 순간 나도 옛날에 남들이 나를 볼 때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을까 하고 되새겨 보기도 하였습니다.

여하튼 나도 속기사였다는 사실에 항상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 골동품을 나만 보고 감상하는 것보다 제 위치 찾아가서 혹시 조그마한 보탬이 될 것 같기에 낡은 이 물건을 속기협회에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보내드립니다.

2010. 8. 24.

필라델피아에서 서길천 드림.

서길천 선생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속기과장을 맡고 있는 이경식입니다.

선생님께서 보내 주신 소포 잘 받아 보았습니다.

서 선생님께서는 저를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저는 1975년도에 국회에 들어와서 태평로에서 몇 개월 근무한 후에 여의도로 이사 올 때 들어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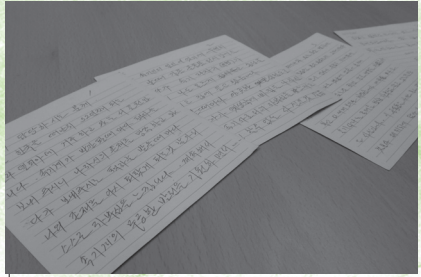
처음 들어와서 하대환 선생님하고 한 짬을 했었죠. 참, 작년에 제가 대한속기협회 이사장직을 맡으면서 옛날 60년대부터 모아 두었던 짬표를 한 데 묶어서 책자로 발간했었는데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 선생님 성함도 나옵니다. 그 당시 담당관실에 계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선생님 목소리며 걸음걸이, 친하셨던 분들 다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76년에 군대에 갔는데 제대하고 오니까 안 보이신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가셨는데 도미니크공화국인가로 잘못 가셨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잘 계신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속기과는 의정기록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1과장은 제가 맡고 있고 2과장은 최예숙 씨가 맡고 있습니다.

보내 주신 속기기계는 잘 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속기계 발간할 때 사진을 찍어서 신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고 속기계를 떠나신 지도 32년이나 되었지만 이렇게 기억해 주셔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쓰신 편지글

항상 평안하시고 가끔 좋은 소식도 들었으면 합니다.  
건강하세요.

2010. 8. 31.  
이 경 식 드림

## Reporter

현재 CAS 자판과 비슷한 바(BAR)식으로 제작되어 있다.

1993년에는 1970년대 후반경에 국내에 도입된 속기기계와 컴퓨터를 연결한 컴퓨터속기가 국내에서 개발되었다.

우리나라 초창기 속기기계는 미국 속기기계를 수입하여 한글화한 것과 미국 속기기계를 분해서 만든 속기계가 있었으며 미국 속기기계를 분해서 만든 속기기계를 헤크닥(HEKDAK)이라 하였다. (아마도 지금 보내오신 리포터는 헤크닥의 전신인 듯합니다)

그러나 미국 속기기계였든지라 한글의 특성과 안 맞아 속도 향상이 어려워서 널리 보급이 되지 못했습니다.

※ 헤크닥은 우리나라에서 컴퓨터와 연결하여 쓰기 위해 만들어진 자판이고, 서길천 회원님이 보내오신 자판은 미국에서 실제 사용하던 자판으로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이핑을 한 내용이 테이프에 찍어서 나오는 식으로 사용되었던 듯합니다.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라고 하지만 기계에 대한 정보는 그 바다에도 별로 없어서 이 정도만 알려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편집자 주



## 제 44 회 정 기 총 회



대한속기협회는 2011년 1월 28일 금요일 오후 7시 여의도 홍보석에서 제4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열린 이번 총회는 김덕진 총무이사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국민 의례, 성원 보고 그리고 2010년 5월 24일 개최된 제18회 속기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18회 속기경기대회 입상자로는 금상 김봉철, 은상 김선미, 동상 정예나, 장려상 지성숙으로 시상은 김기영 부회장님이 해주셨다.

이후 회의에서는 외유 중이신 고흥길 회장을 대신하여 김기영 부회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이경식 의장대리의 주재하에 진행되었는데, 김덕진 총무이사의 회무 및 사업실적 보고에 이어 첫 번째 부의안건인 2010년도 결산 승인의 건은 결산보고와 손석련 감사의 감사결과 보고가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두 번째 부의안건인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승인의 건 역시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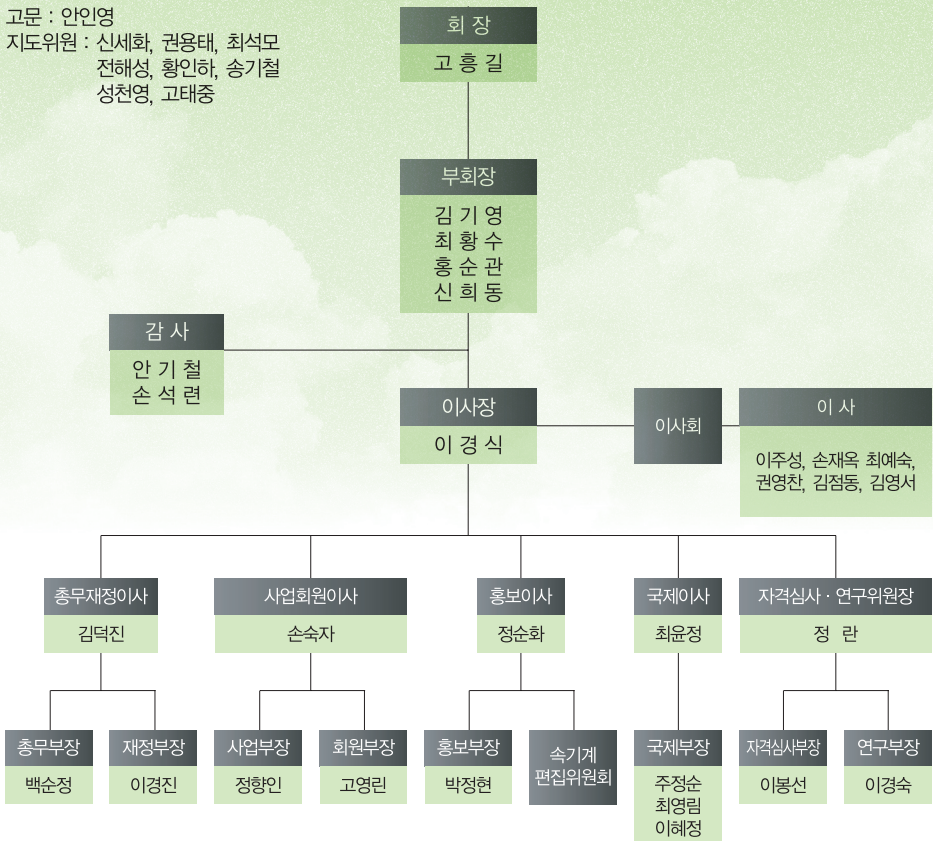
세 번째 부의안건은 기타사항으로 협회의 발전을 위해서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을 개진하는 의견 개진의 건으로 이주성 회원의 협회 구성원의 다양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좋은 말씀이 있으셨다.

이상 3건의 부의안건 심의를 모두 마친 뒤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제44회 정기총회를 폐회하였다.



# 협회 임원 및 기구표

고문 : 안인영  
 지도위원 : 신세화, 권용태, 최석모,  
 전해성, 황인하, 송기철,  
 성천영, 고태중



## 2011 INTERSTENO 국제속기경기대회 참가자 최종선발전



2011 INTERSTENO 국제속기경기대회 참가자 최종선발전을 겸한 2011 속기경기대회가 지난 5월 11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정관 전산교육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는 국제속기경기대회 참가자 선발을 위한 자리로, 특별히 국제경기대회 리얼타임 방식(연설체 8분간 180자 ~ 320자 1분마다 20자씩 빠르게 낭독, 수정시간 없이 제출)으로 치러졌습니다.

선발된 인원은 4명이며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김밀알 김봉철 김진호 이한나 (가나다순)

선발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2011년 국제속기경기대회는 오는 7월 9일부터 1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48회

INTERSTENO 총회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개최됩니다. 한글속기의 우수함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 편집후기

5월의 연초록 나뭇잎처럼 가슴속에 한 줄기 청량함이 지나갈 수 있는 책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속 기계에 대한 여러 회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항상 미흡함은 남는 것 같습니다. 다음 호는 좀 더 잘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아쉬움을 달립니다.

- 정순화

아이템, 아이템……

홍보부에 들어오면서부터 아이템의 압박에 시달린다.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득템에 일희일비하며 지내게 되었다.

그나마 올해는 득템이 빨라 다행이기는 했지만……

내년에는 부다 아이템의 단비가 쏟아지기를……

생각만큼 결과물이 미치지 못하여 상당히 안타까운 요즘입니다.

그래도 항상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하고 감히 바라 봅니다.

- 박정현

대타로 출전해서 포볼로 나간 기분이라 해야 하나 무임승차한 느낌이라 해야 하나……

워낙에 글 쓰는 솜씨가 없어서 그 이외에 잡다한 일이나 열심히 하지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해서 다른 부원들한테 미안한 마음밖에 안 든다, 특히 부장에게는 더욱더……

다음 속기계에는 올해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허드렛일을 처리하는 역할이라도 제 몫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해 본다. (한 번은 제대로 해 봐야겠지? ㅋㅋ)

- 박소연



벌써 세 번째 책을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유독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아주 짝 찬 책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정성 감사합니다 ^^

- 제 신 지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편집부에 들어와 한 해 한 해 벌써 3년이라니……  
군대라면 벌써 제대하고도 남았을 텐데 아직도 이등병 같은 마음입니다.  
열심히도 하고 잘하려고도 하겠습니다 ^^

- 기 자 영

‘1년에 한 권인데 뭐……’  
홍보부에 발 담근 첫 시작, 아무것도 모르던 제 마음이었답니다. ^^::  
벌써 세 번째의 고통스러운(?) 봄이 지나갑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뿌듯함보다는 아쉬움이, 성취감보다는 부끄러운 마음이 진해집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도움 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 김 나 영



## 투 고 를 바 람 니 다

속기계는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 상호 간의 유대와 속기 연구 발표의 창구 노릇을 함으로써 속기 문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책임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생각과 정성으로 만들어진다고 해야겠지요. 저희 홍보부에서는 언제든지 여러분의 글을 환영합니다.

**보내실곳** 대한속기협회 홍보부 (국회 의정기록과)  
TEL. 02)788 - 3086, 3186

**홈페이지** [www.steno.or.kr](http://www.steno.or.kr)

**이 메 일** [foxy76@assembly.go.kr](mailto:foxy76@assembly.go.kr)

**내 용** 표지그림 · 사진, 연구논문, 수필, 회상기, 시, 시조,  
산문, 기타 제언 등

## 회비 납부안내

### 납입안내

회비 1년분 20,000원 (가입비는 10,000원)

협회발전기금 30만 원 이상을 납부한 회원에게는 평생회원으로  
서 회비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보내실곳

회비 농협 301-0052-3315-71 이경진 (협회 재정부장)

협회발전기금 농협 036-01-083485 대한속기협회





## 속기사는...

들은 대로 기록하고 보태거나 빼지 아니한다.  
변문한 원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번지(국회사무처 의정기록과 내)

TEL. 02)788-2371~6









제47호 **速記界**

---

발행 \_ 2011년 5월 24일

발행인 \_ 고흥길

발행처 \_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편집인 \_ 정순화

기자 \_ 박정현, 박소연, 제신지, 기지영, 김나영

디자인·인쇄 \_ 경성문화사(02-786-2999)

전화 \_ 02)788-2371~6

팩스 \_ 02)788-3386, 3387

주소 \_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번지(국회사무처 의정기록과 내)

홈페이지 \_ [HTTP://WWW.STENO.OR.KR](http://www.steno.or.kr)

비매품

